■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03-446.
http://doi.org/10.17948/kcs.2019..83.403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이재경(李在璟)***

목 차

1. 머리말
2. 崇德-康熙 연간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사례
3. 청의 處分 制度를 통해 본 조선국왕 罰銀 관행의 성립
4. 議處·罰銀의 법적 성격과 조선국왕의 위상
5.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과 청 사이에 君臣關係가 확립된 이후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청의 禮部는 여러 차례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여[議處] 上奏하였다. 많은 경우 청의 황제는 처벌을 면해주었으나, 康熙 5년(1666), 康熙 21년(1682), 康熙 25년(1686)에는 조선국왕에게 罰銀을 부과하였다.

조선국왕에 대한 청의 議處·罰銀은 청의 王公 및 官員에 대한 징계, 즉 處分 제도의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本稿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Conference 2017에서 "Legal Status of Chosŏn King in 17th Century Qing Imperial Order"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일환이었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入關 이전부터 宗室 및 몽골 王公에 준하여 상정되었으며, 順治·康熙 연간을 거쳐 處分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정치적 제재나 禮的 問罪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법적 처벌로서의 성격을 띠며, 청과 조선 양국은 공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청은 조선국왕이 청의 法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處分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과정에서 청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청의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명대의 위상과는 차이가 있었고, 安南을 비롯한 기타 조공국의 군주와도 구분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국왕은 청의 封爵 체계에 포섭되어 降等이나 革職을 비롯한 보다 직접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청의 王公 및 官員과도 구별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청이 조선국왕을 청과 구분되는 일국의 군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왕이 大淸帝國體制 내에서 지녔던 법적 위상은 통시적으로도, 공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것이었다.

주제어: 議處, 罰銀, 處分 制度,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大淸帝國體制.

1. 머리말

모든 주권국가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근대 국제질서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자국과 맺은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자국법으로 상대국 정부나 정부요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듯 특정 주권국가 및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외무장관 및 기타 고위 공직자들이 다른 주권국가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법적 면책을 國家免除[State Immunity]라고 부른다.[1] 따라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해나 가치관에 배치되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 징벌을 가하고자 할 경우, 이는 대부분 외교적·경제적 제재(sanction)로 실현된다.[2]

---

1) Joanne Foakes, *The Position of Heads of State and Senior Official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1-28.

2)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제재를 외교적 제재와 狹義의 제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는 외교단계의 단절이나 대사 소환, 후자는 무기 금수·입국 제한·자산 동결·경제 제재 등을 포함한다. 「Different types of sanctions」, European Council, 2018.10.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

그렇다면 국가 간의 평등한 지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근대적 주권 개념이 성립하지 않았던 시대 및 문화권에서는 어떠하였는가? 전통시대 중국은 주변 諸國과 冊封-朝貢 관계를 맺고, 의례적으로 스스로를 다른 국가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황제가 여타 국가에 대해 실질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漢代 황제의 德은 중국 내부와 외부에 고루 미치는 것으로 전제되지만, 중국 내부에는 禮와 法이 모두 적용되고, 중국 밖의 夷狄들에게는 禮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3] 중국의 皇帝는 天子로서 온 "天下"에 군림하지만, 중국 밖에는 法으로 상징되는 황제의 직접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주변 세력이 중국 황제에 대해 취하는 "臣"의 위상은 어디까지나 중국 황제의 지배가 온 "天下"에 미친다고 주장하기 위한 儀禮的・外交的 장치에 불과했다.[4]

그러나 전통시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전혀 "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夫馬進은 명청시대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징벌을 禮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問罪"로 정당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明淸 중국은 주변국의 "非禮"를 구실로 베트남에 대해서는 "問罪의 師"를 일으켜 군사적 침공을 감행하는 한편, 高麗・朝鮮에 대해서는 과중한 歲貢을 요구하여 誠意를 시험한다든지, "問罪의 師"를 출병시키겠다고 위협한다든지, 冊封을 미룬다든지, 罰銀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問罪를 가함으로써 주변국을 통제하려는 외교적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다.[5]

다른 한편, 중국을 지배한 국가가 주변국의 군주 및 관원을 자신의 法으로 직접 처벌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은 몽골의 法이나 황제의 聖旨의 적용을 받는 존재였고, 실제로 충혜왕은 몽골 사법기관의 심문을 받고 유배되는 도중 사망하였다.[6] 물론 몽골 복속기 몽골과 고려의 관

/policies/sanctions/different-types/(2018.11.26 검색).

3) 栗原朋信, 『秦漢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0, 243-249면, 262-283면.

4) 李成珪,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제186집, 역사학회, 2005, 102-118면.

5) 夫馬進, 「明淸中國の對朝鮮外交における「禮」と「問罪」」,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a; 「明淸中國による對朝鮮外交の鏡としての對ベトナム外交」, 같은 책, 2015b.

6) 李命美, 「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 『東國史學』 제60집, 동국역사문화

계를 여타 시기 한중관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7] 明代 이후의 한중관계 구조가 禮制를 통해 나타나는 高麗·朝鮮國王의 儀禮的·制度的 위상, 高麗·朝鮮의 자의식 등의 차원에서 몽골 복속기와 상당한 연속성을 갖는다는 지적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인다면,[8] 몽골 복속기의 사례는 明淸時代 중국이 고려·조선국왕에 대해 자신의 法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몽골 복속기의 사례와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 淸代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君臣關係가 확립된 이후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청의 禮部는 여러 차례 조선국왕의 잘못 및 그에 대한 처벌을 논의[議處]하여 上奏하였다. 많은 경우 청의 황제는 처벌을 면해주었으나, 때로는 조선국왕에게 罰銀을 부과하였다. 이는 조선 사대부들에게 "辱이 上躬에 미치는" 치욕으로 여겨졌고,[9] 따라서 조선은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청이 조선국왕에게 부과한 罰銀의 성격은 무엇인가? 禮를 명분으로 부과된 외교적·정치적 제재였는가, 아니면 청 내부의 법적 기준에 따라 부과된 법적 처벌이었는가? 淸代 조선국왕에게 罰銀이 부과되었음을 지적한 논저는 여럿 있으나,[10] 罰銀의 성격 그 자체를 문제로 삼은 연구는 소수이다. 夫馬進은 청의 罰銀을 明淸時代 중국이 조선의 "非禮"를 명분으로 삼아 제

연구소, 2016a, 105-113면.

7) 관련 논쟁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2016b, 14-20면 참조.

8) 예컨대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제51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a; 「1356(공민왕 5)~1369년(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 '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歷史敎育』 제116집, 역사교육연구회, 2010b, 236면; Jung Donghun, "From a Lord to a Bureaucrat: The Change of Koryŏ King's Status in the Korea-China Relatio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9-2,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제7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9) 『顯宗實錄』 卷13 현종 7년 12월 25일(辛未); 『顯宗改修實錄』 卷16 현종 7년 12월 26일(壬申).

10) 예를 들어 최소자, 『淸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32-33면, 36-37면; 李花子, 『朝淸國境問題硏究』, 集文堂, 2008, 76-77면, 91-103면; 金暻綠, 「朝鮮時代 朝貢體制와 對中國 使行」, 『明淸史硏究』 제30집, 명청사학회, 2008, 111면.

재를 가한 사례 중 하나로 파악하였다. 그는 명확한 罰則規定이 없다는 의미에서 明淸時代 중국의 問罪는 국내에서의 刑과 구분되며, 오히려 외교용어로서 현대의 超大國이 가하는 제재에 가깝다고 보았다.[11] 아울러 여러 연구는 罰銀이 三藩의 난 당시 청에 불리한 행동을 취했던 조선을 징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2]

반면 張存武는 청 황제가 조선국왕 및 그 臣下에 대해 賞罰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고 보면서, 그 예로 조선국왕이 다양한 종류의 과실로 罰銀을 부과받았음을 제시하였다.[13] 矢木毅 역시 조선이 청 영토로 犯越한 조선인의 처리에 대해 청 황제의 지시를 따라야 했으며, 조선국왕 자신도 犯越 문제로 종종 징벌의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14] 이들 연구는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을 법적 처벌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5]

이들 연구는 罰銀에 대해 상반된 이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罰銀의 성격 규명을 위해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 즉 罰銀이 어떤 절차를 통해 부과되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청과 조선에서 罰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탐색함으로써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청이 "大淸帝國體制" 속에서 조선국왕을 어떤 위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朝淸關係의 공시적·통시적 특수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 기대된다.

---

11) 夫馬進, 앞의 글, 2015a, 68-78면; 앞의 글, 2015b, 573면.

12) 張存武, 「淸韓陸防政策及其實施: 淸季中韓界務糾紛的再解釋」,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a, 252-253면; 李花子, 앞의 책, 75-83면.

13) 張存武, 「淸韓封貢關係之制度性分析」,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b, 75-76면, 78면, 80면.

14) 矢木毅, 「朝鮮時代における死刑囚の再審制度: 詳覆・三覆啓と淸朝の秋審」, 『東方學報』 第90冊,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15, 163-164면.

15) 이외에 金慧子,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硏究」, 『梨大史苑』 제18·19집, 梨花女大 史學會, 1982, 66면은 조선인의 犯越로 인해 조선국왕에게 부과된 罰銀을 "賠償金"이라고 표현하였고, 김근하,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朝鮮時代史學報』 제7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116-118면은 康熙 5년의 安秋元 사건 당시 顯宗에게 부과된 罰銀을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에 강요한 "丁丑約條"를 위반한 데 대한 처벌로 파악하였다.

2장에서는 崇德-康熙 연간 청이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논의, 집행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청이 조선을 질책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지만,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을 직접적으로 의논했거나, "免議"하기로 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청대 處分 제도와의 연관을 통하여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제도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법률적 근거 및 이것이 朝淸 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본론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하여 淸代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을 통시적·공시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2. 崇德-康熙 연간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사례

청에서 최초로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崇德 3년(1638)의 일이었다. 청은 조선에 명 공격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기일 내로 군대를 보내지 못하였다.[16] 이에 淸 太宗은 명을 치러 간 諸王이 돌아온 후 그들의 의논을 거쳐 罰을 결정하겠다고 전하였다.[17] 비록 이때는 仁祖의 罪를 용서해 주겠다는 勅諭가 내려짐으로써 사안이 종결되었지만,[18] 이후 언제든지 청에서 조선국왕의 잘못을 의논하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이 천명된 것이다(①).

入關 이후 최초로 조선국왕의 잘못을 의논하려 한 것은 順治 10년(1653)의 일이다. 順治 9년 조선에서 바친 歲貢品 일부가 불량했고, 일부는 운송 과정에서 손상이 있었다. 이에 禮部에서는 조선국왕 및 使臣 일행을 議處해야 한다고 주청하였으나, 順治帝는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책임이 있는 臣下에게 罰을 내리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선에서 그쳤다(②).[19]

---

16) 당시의 징병 문제에 대해서는 劉家駒, 『淸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211-229면; 張存武, 「淸韓關係: 一六三六-一六四四」, 『淸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c, 35-40면;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220-221면 등을 참고.

17) 『淸太宗實錄』 卷44 崇德 3년 10월 9일(戊戌).

18) 「宥師期遲悞勅(滿月箇來 己卯)」, 『同文彙考』 別編 卷4 軍務.

19) 「禮部飭貢幣火燒水濕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18 節使 一; 『通文館志』 卷9 紀年 孝宗 4년. 이하 지면의 제약상 조선국왕의 처벌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사료만 거론하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사

順治 13년(1656)에는 犯越・殺人 문제로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이 제기되었다. 順治 11년에 벌어진 조선인의 犯越・殺人 사건에 대하여, 조선의 초기 보고에 만족하지 못한 청에서는 勅使를 파견해 犯人과 책임자를 색출하였다. 이후 禮部에서는 부실조사에 책임이 있는 조선국왕에게 罰로 銀 1천 兩・豹皮 50張・獺皮 100張・大紙 1천 卷・腰刀 10把・順刀 10把를 부과하고 신하들 역시 降級・革職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順治帝는 조선국왕의 죄를 논의하는 것은 특별히 면해주되, 재차 勅使를 파견하여 조선의 부실조사에 대해 심문하도록 하였다.[20] 이후 順治帝는 국왕 및 신하들에 대해 모두 免議하도록 하였다.[21] 결국 처벌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액수가 최초로 제기된 사례이다(③).

이듬해인 順治 14년(1657)에는 조선에서 올린 歲貢 總單에 腰刀 10把가 100把로 잘못 적혔음이 드러났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의 表文과 咨文은 모두 착오가 없으니 免議해야 하지만, 總單을 제출할 때 살피지 않은 조선 使臣 尹絳 등은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治罪하도록 할 것을 주청하였다. 하지만 順治帝는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였다(④).[22]

順治 18년(1661)에는 조선국왕의 咨文에 적힌 王旨・瀋陽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刑部의 題本에 인용되어 상주되었고, 황제는 마땅하지 않으니 禮部에서 알려주도록 하라는 諭旨를 내렸다.[23] 이에 대해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을 議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황제는 免議하도록 하였다(⑤).[24]

康熙 2년(1663)에는 전년 조선에서 進貢한 물건이 불량한 것이 확인되었다.

료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을 밝혀둔다.

20) 「遣官再按原查各官勅(大學士額色黑等來, 丙申○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 「禮部知會免議及遣宮更查各官咨」,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 『通文館志』 卷9 紀年 孝宗 7년.

21) 「禮部知會各官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 『通文館志』 卷9 紀年 孝宗 7년.

22) 「【丁酉】禮部申飭誤寫總單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23) 順治帝는 順治 18년 1월 7일에 사망하고 康熙帝가 1월 9일에 즉위하였으므로 이때의 황제는 康熙帝이다. 『淸聖祖實錄』 卷1 順治 18년 정월 7일(丁巳); 9일(己未).

24) 「禮部知會各犯原免及飭改正王旨字咨互勅諭」, 『同文彙考』 原編 卷63 犯禁 一; 「禮部知會咨內王旨字免議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通文館志』 卷9 紀年 顯宗 2년. 夫馬進은 조선이 황제의 諭旨를 王旨로 잘못 지칭하였다고 보았으나, 해당 문서의 王旨는 조선국왕의 명령을 지칭한 것이다. 夫馬進, 앞의 글, 2015a, 68-69면.

당시 三節年貢行 呂爾載 일행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안았다. 이에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는 외에, 呂爾載 등에 대해서는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罪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할 것을 주청하였다. 康熙帝는 貢物을 소홀하게 한 것은 본디 議處해야 할 것이나 寬免할 것을 지시하였다(⑥).[25]

康熙 5년(1666)에는 최초로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이 실제 집행되었다. 康熙 3년(1664), 병자호란 때 청군에 끌려간 安秋元이 조선으로 도망쳐왔다. 조선 조정은 그를 내지에 숨겨주었으나, 그는 2년 뒤 다시 청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혔다. 청은 勅使를 파견해 심문하였고, 顯宗은 영의정 鄭太和・우의정 洪命夏 등이 重罪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라고 自當하였다.[26]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罰銀 1만 냥을 부과하고, 鄭太和 등은 官爵을 削奪하고 極邊에 遠配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康熙帝는 국왕이 스스로 罪를 인정하였으니 鄭太和 등은 寬免하도록 하고,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 역시 5천 냥으로 줄여주었다. 이는 이듬해 謝恩兼陳奏使 檜原君 李倫 일행 편에 납부되었다(⑦).[27]

康熙 6년(1667)에는 조선에서 禮物로 바친 종이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使臣 鄭知和 등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하였고, 禮部에서도 조선국왕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康熙帝는 마땅히 諭旨를 청해야 하는데 즉시 면해주기를 의논한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다시 의논할 것을 명하였고, 禮部에서는 罰銀 1천 냥을 부과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康熙帝는 조선국왕이 臣下들에게 敬謹하도록 하였으니 免罰하도록 하였다(⑧).[28]

康熙 11년(1672)에는 전년 조선국왕이 기근으로 貢幣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오자, 禮部는 이를 핑계라고 비판하며 조선국왕에게 공물이

---

25) 「禮部飭斜皮紙張不堪使臣姑從寬免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19 節使 二.

26) 安秋元 사건에 대해서는 한명기, 앞의 책, 440-442면; 李孟衡, 「從朝鮮、滿洲間的逃人刷還問題看十七世紀東北亞國際秩序變遷」, 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108-111면; 김근하, 앞의 글, 103-118면; 김우진, 「安秋元・南明遺民 사건과 顯宗의 현실인식」, 『史學志』 제54집, 檀國大 史學會, 2017, 5-15면 참조.

27) 「謝罪銀減半各官寬免表(丁未)」, 『同文彙考』 原編 卷65 刷還; 『通文館志』 卷9 紀年 顯宗 7-8년;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丙午 11월 29일,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21, 東國大 出版部, 2001, 218면.

28) 「禮部知會貢紙不堪免罰及使臣著議奏咨(丁未, 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20 節使 三; 『通文館志』 卷9 紀年 顯宗 8년 丁未(1667); 『顯宗實錄』 卷13 현종 8년 3월 21일(乙未); 『顯宗改修實錄』 卷17 현종 8년 3월 21일(乙未).

소홀한 이유를 回奏하도록 하고 보고가 온 후에 다시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康熙帝는 困苦한 상황을 미리 설명했으니 回奏하는 것은 면해주도록 했다.[29] 이때는 실제 조선국왕의 잘못을 따지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조선국왕의 해명에 따라 罰을 논의할 예정이었음은 분명하다(⑨).

숙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다시 조선국왕의 잘못을 의논하고 罰銀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康熙 15년, 조선은 『明史』를 편찬할 때 인조반정을 찬탈로 기록한 『皇明十六朝紀』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말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의 요청을 거절했을뿐더러, 오히려 수출 금지 대상인 역사서를 사들였다는 이유로 조선국왕에게 관련자 조사를 명령하였다.[30] 조선이 조사 결과를 알려오자, 禮部에서는 康熙 15년의 恩赦 이전 사건이므로 使臣 일행에 대한 議處를 면제하되, 국왕에 대해서는 國法을 어기고 사들인 역사서를 근거로 주청하였으며 책의 입수 경위에 대해 초기에 애매하게 언급했다는 이유로 罰銀 5천 냥을 부과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康熙 16년(1677) 康熙帝는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免罰하도록 하였다(⑩).[31]

같은 康熙 16년에는 전년의 三節年貢行 수행원이었던 愼行建이 天下各省輿圖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禮部에서는 愼行建을 革職・充軍하고 三使臣은 革職하기를 요청하였다. 禮部는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查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항상 使臣을 戒飭하였고 이전에 使臣의 犯法에 대해서는 국왕을 坐罪한 적이 없으므로 免議할 것을 주청하여 康熙帝의 윤허를 받았다(⑪).[32]

康熙 18년(1679)에는 康熙帝가 조선에서 전년 올린 冬至表文에 격식을 어긴 글자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禮部는 避諱를 어겼다 하여 罰銀 5천 냥을 부과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康熙帝는 罰을 면해주도록 하였다(⑫).[33] 당시

29) 「禮部知會幣品不符議令回奏奉旨寬免咨(互飭議)」, 『同文彙考』 原編 卷20 節使 三; 『通文館志』 卷9 紀年 顯宗 12-13년; 『淸聖祖實錄』 卷38 康熙 11년 2월 11일(丁亥).

30) 숙종대 인조반정 辨誣에 대해서는 李成珪, 「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五松李公範敎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知識産業社, 1993; 한명기, 앞의 책, 520-527면 참고.

31) 「禮部知會寬免罰銀咨」, 『同文彙考』 原編 卷33 陳奏 一;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2-3년; 『肅宗實錄』 卷6 숙종 3년 9월 16일(庚寅).

32) 「【丁巳】禮部知會年貢行員役私帶地圖交該國審奏咨(互飭議)」, 『同文彙考』 原編 卷64 犯禁 二; 「部知會免議及犯人擬罪咨」, 『同文彙考』 原編 卷64 犯禁 二;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3년 丁巳(1677).

조선에서 바친 冬至表文의 원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康熙帝의 諱 玄燁 중 "玄"을 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34]

康熙 20년(1681)에는 다시 犯越이 문제가 되었다. 康熙 19년 조선인 3명이 두만강을 건너 나무를 베다가 붙잡히자, 禮部에서는 勅使를 보내어 조선국왕과 함께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한 뒤,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査議하기를 청하였다. 조사 이후 康熙 20년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罰銀 1만 냥을 부과할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康熙帝는 이는 작은 일이고 별로 관계되는 바가 없으니 免罰하도록 하였다(⑬).[35]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조선국왕이 두 번째로 罰銀을 납부하는 단초가 되었다. 康熙帝가 조선국왕의 罰銀 1만 냥을 免罰한 原旨는 "李焞着從寬免罪"였는데,[36] 조선의 謝恩表文에는 "朝鮮國王着減罰銀一萬兩"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37] 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康熙 21년(1682) 조선에서는 免을 減으로 잘못 쓴 사유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청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조선국왕의 御諱를 빼고 "朝鮮國王"으로 바꿔 쓴 일도 포함한 것이었다. 禮部에서는 이전의 잘못은 康熙 20년 사면령 전의 일이지만, 이번에 다시 姓名을 쓰지 않은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罰銀 5천 냥을 부과할 것을 청하였다. 康熙帝 역시 이를 윤허하였고, 결국 조선은 謝恩使 金錫胄 편에 罰銀을 납부하였다(⑭).[38]

康熙 24년(1685)에는 소 무역 문제로 罰銀이 논의되었다. 조선은 康熙 24

33) 「【己未】禮部知會冬至表內犯回避字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5년. 罰銀의 액수는 『通文館志』에만 나오고, 『同文彙考』에는 생략되어 있다.

34) 金海一, 「燕行日記」 己未 정월 16일, 『檀溪集』 卷3,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28, 東國大 出版部, 2001; 2월 10일, 같은 책; 『承政院日記』 숙종 15년 12월 19일(辛巳).

35) 「禮部知會寬免咨(辛酉)」, 『同文彙考』 原編 卷50 犯越 二 我國人;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6-7년; 『康熙起居注』 10冊 康熙 20년 2월 10일(甲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代起居注冊・康熙朝, 北京: 中華書局, 2009b, 4614면.

36) 「【辛酉】禮部查議謝寬免表內述旨不符原旨咨(互犯越)」 및 「禮部知會奏文違式罰銀咨」에는 각각 "姓某着從寬免罪" 및 "姓某著從寬免罰"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숙종의 御諱를 避諱한 것이다.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37) 「謝寬免表(使昌城君佖)」에는 해당 구절이 없는데, 본문 앞뒤에 "云云"으로 처리된 부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同文彙考』 原編 卷50 犯越 二 我國人.

38) 「禮部知會奏文違式罰銀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7-8년; 『康熙起居注』 13冊 康熙 21년 9월 28일(壬申), 앞의 책, 2009b, 6179-6180면.

년 牛疫이 심함을 이유로 開市에서의 소 무역을 당분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禮部는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回奏하도록 한 뒤 다시 의논할 것을 청하였으나, 康熙帝는 관대히 봐주면 차후로 또 해이해질 것이라 하며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에 禮部가 罰銀 1만 냥의 부과를 주청하자, 康熙帝는 外藩의 小國이니 일단 한 차례 관대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⑮).[39]

같은 해에는 淸代 조선인 犯越 사안 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三道溝 사건이 발생했다. 三道溝 사건은 康熙 24년 8월 조선인 수십 명이 압록강을 건너 청 경내에서 採蔘하다가 皇命을 받들고 輿圖를 그리던 청 官兵과 충돌, 鳥銃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40] 청에서는 勅使를 파견하여 조선국왕과 함께 관련자들을 조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선국왕의 잘못도 함께 察議하도록 하였다. 勅使로 온 護軍統領 佟保는 康熙 25년(1686)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조선국왕에게 罰銀 2만 냥을 부과할 것을 주청하였다. 禮部의 논의 역시 이와 같았고, 康熙帝도 이를 윤허함으로써 罰銀 부과가 확정되었다(⑯). 罰銀 2만 냥은 謝恩兼陳奏行 南九萬 일행에 의해 납부되었다.[41] 이는 淸代 조선국왕에게 부과된 罰銀 중 최고액이다.

康熙 28년에는 조선에서 禧嬪 張氏를 왕비로 책봉해줄 것을 요청하는 奏文에 마땅히 廻避해야 할 글자를 그대로 썼으며, "德冠後宮"이라는 표현도 例를 어겼으니 罰銀 5천 냥을 부과해야 한다고 禮部가 주청하였다. 康熙帝는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回奏하도록 하였고, 康熙 29년(1690) 조선에서는 의도는 없었으나 착오를 범했다는 奏文을 올렸다. 이를 받은 康熙帝는 罰銀을 면제하였다(⑰).[42] 이때 문제가 된 글자는 皇太子 胤礽의 이름에 포함된 胤이었다.[43]

---

39) 「禮部知會不許停市及寬免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45 交易 一;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11년; 『康熙起居注』 18冊 康熙 24년 6월 25일(甲寅), 앞의 책, 2009b, 9026-9028면; 28일(丁巳), 같은 책, 9031면; 7월 8일(壬戌), 같은 책, 9039면; 『淸聖祖實錄』 卷121 康熙 24년 6월 25일(甲寅).

40) 三道溝 사건의 심리 과정, 조선과 청의 교섭 및 조선의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李花子, 앞의 책, 91-108면 및 王燕杰, 「淸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 以朝鮮人越境犯罪案件的審理爲中心」,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59-63면 참조.

41) 「遣官查擬勅(護軍統領佟保等來, 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禮部知會罰銀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通文館志』 卷9 紀年 숙종 11-12년; 『康熙起居注』 19冊 康熙 25년 2월 2일(丙戌), 앞의 책, 2009b, 9590면; 『淸聖祖實錄』 卷124 康熙 25년 2월 3일(丁亥);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3월 7일(辛酉).

이듬해인 康熙 30년(1691)에는 또다시 조선인들이 採蔘을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淸 採蔘人을 鳥銃으로 쏘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禮部에서는 초기부터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議處할 것을 주장하였고, 조선 측 초기 보고와 청 측의 사실 파악이 맞지 않자 勅使가 파견되어 공동으로 심문하였다. 勅使로 파견된 內閣學士 兼禮部侍郎 西安과 一等待衛 羅科多는 조선국왕에게 罰銀 1만 냥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청하였으며, 禮部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康熙帝가 이를 면해줌으로써 罰銀은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다(⑱).[44]

같은 해에는 전년의 三節年貢行 일행을 수행하던 譯官 張燦이 『一統志』를 사서 돌아가다가 柵門에서 발각되었다. 禮部에서는 三使臣은 革職하고 張燦을 邊界充軍하도록 하되, 조선국왕은 科條를 遵奉하여 臣民을 戒飭하였으므로 免議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康熙帝는 三使臣의 革職도 면해주도록 하였다(⑲).[45]

康熙 34년(1695)에는 조선에서 올린 箋文으로 인하여 罰銀 부과가 요청되었다. 康熙 32년 조선에서는 폐비되었던 仁顯王后 閔氏를 다시 왕비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康熙 33년에 올린 謝恩箋文에 들어간 "幹蠱"라는 글자가 문제시된 것이다.[46] 禮部에서는 3년 동안 賞賜를 정지할 것과 罰銀 1만 냥을 부과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康熙帝는 모두 寬免하도록 하였다(⑳).[47]

이후 20년 뒤인 康熙 55년(1716)에 다시 使臣 일행의 밀수 문제로 논의가

---

42) 「【己巳】禮部知會准請及奏文違式咨(互封典)」,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禮部知會寬免咨(文闕)」,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15-16년; 『康熙起居注』 25冊 康熙 28년 11월 16일(己酉), 앞의 책, 2009b, 12807-12808면; 『淸聖祖實錄』 卷148 강희 29년 8월 24일(壬午); 『康熙起居注』 1冊 康熙 29년 8월 24일(壬午), 國立古宮博物院, 淸代起居注冊・康熙朝, 臺北: 聯京出版事業公司, 2009a, 420면.

43) 「請改封王妃奏(互陳奏)」, 『同文彙考』 原編 卷1 封典 一. "德冠後宮, 且生胤子."; 丁若鏞 外, 『事大考例』 卷25 表奏違式例, 동아시아學術院・大東文化硏究院 共編, 茶山學團 文獻集成 9, 成均館大 出版部, 2008, 627면. "應行廻避字樣, 不行回避[割註: 卽胤字]."

44) 「禮部知會犯人緝捕疏防官查明咨」, 『同文彙考』 原編 卷52 犯越 四 我國人; 「禮部知會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52 犯越 四 我國人;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16-17년; 『康熙起居注』 2冊 康熙 30년 6월 17일(辛未), 앞의 책, 2009a, 799면.

45) 『康熙起居注』 2冊 康熙 30년 7월 5일(戊子), 앞의 책, 2009a, 815-816면; 『淸聖祖實錄』 卷152 康熙 30년 7월 6일(己丑).

46) 「謝復位箋」, 『同文彙考』 原編 卷2 封典 二. "彩溢前星, 克著幹蠱之譽 (…) 【禮部以幹蠱二字不合用, 議罰】"

47) 「禮部議罰停賞俱從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20-22면; 『康熙起居注』 7冊 康熙 34년 10월 9일 戊戌, 앞의 책, 2009a, 3482면; 『肅宗實錄』 卷29 숙종 21년 10월 24일(癸丑).

이루어졌다. 전년 三節年貢行 수행원이 禁物인 黑角 360개를 몰래 사오다가 柵門에서 발각된 것이다. 禮部에서는 犯人 嚴立・貴先 등을 邊界充軍・責 40板에 처하도록 하며, 三使臣은 革職하고, 조선국왕 역시 査議해야 하나 일이 드러나자 즉시 조사해 보고했으므로 免議할 것을 주청하였다. 康熙帝는 이를 따르되 犯人들에 대해서도 充軍을 면제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㉑).[48] 이 사건이 康熙 연간 조선국왕의 처벌이 논의된 마지막 사안이 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49]

〈표 1〉 崇德-康熙 연간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일람

연번	분류	연도	사안	禮部 건의	皇帝 결정	실행
①	軍務	崇德 4년(1639)	명 공격 출병 기한 놓침	X	議處 시사 → 免罪	X
②	貢物	順治 10년(1653)	金・綿紬 등 상태 불량	議處	조선국왕에게 책임자 처벌 명령	X
③	犯越	順治 13년(1656)	조선인의 두만강 越境・殺人 및 사건 부실조사	罰銀 1천 兩 豹皮 50張 獺皮 100張 大紙 1천 卷 腰刀 10把 順刀 10把	국왕・신하 모두 免議	X
④	文書	順治 14년(1657)	歲貢 總單에 숫자 기재 오류	免議	모두 처벌 면제	X
⑤	文書	順治 18년(1661)	咨文에 "王旨" 표기	議處	免議	X
⑥	貢物	康熙 2년(1663)	斜皮・紙 상태 불량	免議	寬免	X
⑦	逃人	康熙 5년(1666)	走回人 安秋元 은닉	罰銀 1만 냥	罰銀 5천 냥	O
⑧	貢物	康熙 6년(1667)	紙 상태 불량	不議 → 罰銀 1천 냥	議處 → 免罰	X
⑨	貢物	康熙 11년(1672)	기근으로 인한 貢弊 불량 통보	回奏 명령 후 再議	回奏 면제	X
⑩	禁物	康熙 16년(1677)	使臣 일행의 『皇明十六朝紀』 등 史書 구매, 이를 통한 인조반정 辨誣, 구매 경위 보고 미흡	罰銀 5천 냥	免罰	X

48) 「禮部知會使臣及犯人從寬勘處依題免議咨」, 『同文彙考』 原編 卷64 犯禁 二; 『通文館志』 卷9 紀年 肅宗 41-42년; 『康熙起居注』 30冊 康熙 55년 2월 27일(戊子), 앞의 책, 2009b, 14927-14928면.

49) 김창수, 「17~18세기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과 조선・청 관계 구조」, 『朝鮮時代史學報』 제8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9, 87-88면의 〈표 1〉은 1677-1696년의 罰銀 관련 사건 11건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本稿 역시 이를 참고하였으나, 시기 및 내용을 달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였다.

⑪	禁物	康熙 16년(1677)	使臣 수행원 天下各省輿圖 소지	査議 → 免議	允許	X
⑫	文書	康熙 18년(1679)	冬至表文에서 康熙帝의 御諱[玄燁]를 범함[玄]	罰銀 5천 냥	免罰	X
⑬	犯越	康熙 20년(1681)	조선인의 두만강 越境	罰銀 1만 냥	免罰	X
⑭	文書	康熙 21년(1682)	表文에 康熙帝의 諭旨 잘못 인용 + 국왕 姓名 누락	罰銀 5천 냥	允許	O
⑮	貿易	康熙 24년(1685)	牛疫으로 인한 會寧・慶源・義州 開市 중지 요청	罰銀 1만 냥	寬免	X
⑯	犯越	康熙 25년(1686)	조선인 수십 인의 압록강 越境, 청 官兵과 접전	罰銀 2만 냥	允許	O
⑰	文書	康熙 29년(1690)	禧嬪 張氏 왕비 책봉요청 奏文에 황태자 御諱[胤礽]를 범함[胤] + 부적절한 어구[德冠後宮]	罰銀 5천 냥	回奏 명령 → 免議	X
⑱	犯越	康熙 30년(1691)	조선인의 두만강 越境・殺人	罰銀 1만 냥	免罰	X
⑲	禁物	康熙 30년(1691)	使臣 일행의『一統志』구매	免議	국왕・使臣 모두 免議	X
⑳	文書	康熙 34년(1695)	謝恩箋文에 "幹蠱" 표기	罰銀 1만 냥, 3년간 賞賜 정지	寬免	X
㉑	禁物	康熙 55년(1716)	使臣 일행의 黑角 구매	免議	允許, 犯人 감형	X

* 연도는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議處・罰銀이 최종 결정된 시점을 지칭.
**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여부만 표시했으며, 犯越 등의 사안은 조선 臣民에 대한 처벌 존재.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崇德-康熙 연간에는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罰銀이 실제로 부과된 것은 3회에 불과하지만, 禮部에서 罰銀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과를 요청한 것은 12회에 이르며, 罰銀의 전 단계인 議處가 건의되거나 議處를 면제함을 명백히 밝힌 것까지 합치면 총 21회가 된다. 특히 議處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順治 10년(1653)부터 康熙 34년(1695)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하면 43년간 19번, 약 2.3년에 1회의 議處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청의 處分 制度를 통해 본 조선국왕 罰銀 관행의 성립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이 조선국왕에게 부과한 罰銀 중 일부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견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議處·罰銀이 順治-康熙 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더라도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일정한 제도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발전과정을 淸代 處分 制度와의 연관성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제도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淸代에는 官員 및 王公에 대한 懲戒를 刑罰과 구분하여 處分이라고 불렀다.[50] 『光緖大淸會典』은 處分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1]

> 무릇 處分하는 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罰俸으로 그 등급이 일곱이다. [原註: 그 응당 받아야 할 俸祿을 罰하는 것이다. 年月로 차등을 둔다.] 둘째는 降級으로, 留任은 그 등급이 셋이고 [原註: 그 現任의 級을 遞降하여 내려간 級에 따라 俸祿을 먹도록 하며 現任에 그대로 머물러 두는 것으로, 級으로 차등을 둔다.] 調用은 그 등급이 다섯이다. [原註: 現任의 級보다 실제로 降級하여 離任시키는 것이다. 級으로 차등을 둔다.] 셋째는 革職으로 그 등급이 하나이다. (…) 무릇 處分은 革職에 이르면 그친다. 심한 경우에는 永不敍用이라 한다. 革職하고도 餘罪가 있으면 刑部로 보낸다.

즉 處分은 官員이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俸祿을 몰수하거나, 降等하거나, 官職에서 해임함으로써 처벌하는 일종의 징계조치였다. 실제로 淸代에는 官員이 笞刑이나 杖刑에 해당하는 公罪·私罪를 범하면 罰俸 1개월에서 革職까지 등급에 따라 處分하는 것으로 刑罰을 대신하도록 하였다.[52] 處分

50) 淸代 處分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나, 제도 전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艾永明, 「淸朝行政處分制度研究」, 『江蘇社會科學』 2004年 第2期, 江蘇省南京市, 2004를, 연구사 정리로는 許穎, 「淸代行政處分制度研究現狀述評」,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3期, 西南大學期刊社, 2010을 참고.

51) 『光緖大淸會典』 卷11 吏部 考功淸吏司,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79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2002, 113下-114上.

은 文武官員뿐만 아니라 宗室 및 外藩 王公에게도 적용되었다. 淸代 文武官員에 대한 處分은 吏部와 兵部에서 관장한 반면, 宗室 王公은 宗人府에서, 外藩 王公은 理藩院에서 관할하였다.[53]

處分을 위한 필수적 절차가 議處였다. 議處란 "官員이 參覈을 당하면 諭旨를 받들어 그 犯한 罪狀을 部에 내려 罰을 의논하는 것"으로서,[54] 마땅한 '處分'을 '議論'하는 행위를 지칭했다. 議處할 때는 기본적으로 『處分則例』의 해당 조항을 따르나, 해당하는 조항이 없으면 律을 인용하고, 律에도 해당 조항이 없으면 比議하되 그 내용을 밝혀서 定例로 삼도록 하였다. 또한 실정과 則例가 맞지 않으면 處分의 수위를 가감할 수도 있었다.[55]

淸初의 罰銀은 官員 및 王公에 대한 처벌방식으로서 후대의 罰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罰銀은 入關 이전부터 시행된 財産刑의 일종으로, 만주어로는 "罰을 거둔다(weile gaimbi)" 혹은 "정해진 罰을 거둔다(tuhere weile gaimbi)"라고 불렸다. 八旗 官人이나 宗室 王公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法司에서 대상자의 官位(hergen)와 罪目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銀을 거두기를 청하면, 황제의 재가나 加減을 거쳐 집행되었다.[56] 宗室 王公들에게도 罰銀이 빈번히 부과되었으며, 重罪를 저질렀을 경우 降等이나 削爵 등의 처벌이 竝科되기도 했다.[57] 入關 이전에는 아직 형벌과 구분되는 징계로서의 處分

52) 「文武官犯公罪・文武官犯私罪」, 『大淸律例』 卷4 名例律上, 鄭秦・田濤 點校, 中華轉世法典 大淸律例, 北京: 法律出版社, 1998, 90-91면. 本稿에서 이용한 『大淸律例』는 乾隆 5년(1740) 頒布・刊刻된 板本이며, 원문 인용시 簡體字 및 標點은 필자가 수정하였다.

53) 『光緖大淸會典』 卷1 宗人府, 앞의 책, 29上; 卷63 理藩院, 같은 책, 608上; 卷65 理藩院 王會淸吏司, 같은 책, 626上.

54) 『六部成語注解』 吏部成語, 內藤乾吉 原校, 程兆奇 標點, 程天權 審訂, 六部成語注解,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7, 12면. "議處: 官員被參, 奉旨, 將其所犯之罪狀, 下部議罰."

55) 『光緖大淸會典』 卷11 吏部 考功淸吏司, 앞의 책, 114下-115下. 실제로 順治 12년(1655) 吏部尙書 韓垈 등은 아직 만주 官員의 處分에 대한 일정한 律例가 없는 상황에서도 事情의 輕重을 헤아려 議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韓垈 等, 「吏部處分過之滿洲官員事件文冊」, 國立北平故宮博物院大獻館 編, 『文獻叢編』 26-2, 1937, 1a.

56) 張晉藩・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533-542면. 잘못이 중대할 경우 정해진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罰銀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같은 책, 533면; 劉世哲, 「淸太宗時期宗室犯罪的量刑原則和處罰方式」, 『民族硏究』 1993年 第5期, 中國社會科學院 民族學與人類學硏究所, 1993, 95면.

57) 劉世哲, 앞의 글, 93-95면.

개념이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罰銀은 降等・革職과 마찬가지로 官員에 대한 처벌로 여겨지고 있었다.[58]

入關 이후에도 罰銀은 八旗 官員 및 宗室 王公에 대한 처벌방식으로 한동안 존속하였다. 順治 연간의 『東華錄』이나 檔案에는 官員에 대한 처벌로 "土黑勒威勒[tuhere weile]"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罰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入關 이전의 罰銀은 官位에 따라 기준 액수가 정해져 있었지만,[59] 順治 3년(1646)부터 旗人에 대한 俸祿이 점차 확정되자[60] 罰銀은 '1개 土黑勒威勒=俸祿의 10%'를 단위로 부과되었다.[61] 한편 漢人 官員들에게는 명대부터 이어져 온 罰俸이 계속 부과되었다.[62]

順治 연간 원칙적으로 罰銀은 旗人에게, 罰俸은 漢人에게 부과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順治 11년(1654) 工科副理事官 祁通格은 滿官에 대한 罰銀을 漢官의 예에 따라 罰俸으로 고칠 것을 건의하였다.[63] 이 건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당시부터 罰銀과 罰俸이 혼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듯하다.[64] 따라서 두 가지 처벌을 함께 존속시킬 필요성 역시 약화되었다. 그 결과 康熙 10년(1671)에는 宗人府・吏部・兵部에 명하여 王 이하 文武官員에 대한 罰銀을 모두 罰俸에 통합시켰다.[65]

한편, 몽골 王公에 대한 처벌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청은 入關 이전

58) 『內國史院檔』 天聰 5년 7월 8일,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綜合的研究チーム 譯注, 內國史院檔・天聰五年 Ⅱ, 東京: 東洋文庫, 2013, 164면.
59) 張晉藩・郭成康, 앞의 책, 536-541면.
60) 上田裕之, 「八旗俸祿制度の成立過程」, 『滿族史研究』 第2號, 東洋文庫 清代史研究室 滿族史研究會, 2003, 29-33면.
61) 鄭天挺, 「清史語解」, 『清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45/1999, 101-104면; 孟姝芳, 「清乾隆中後期罰扣大員養廉銀與其行政處分之關系探析」, 『安徽史學』 2007年 第2期, 安徽省社會科學院, 2007, 30-31면.
62) 明代의 罰俸에 대해서는 王興亞, 「明代罰俸制度述論」, 『中州學刊』 1993年 第2期, 河南省社會科學院, 1993, 100-104면을 참조.
63) 『清世祖實錄』 卷18 順治 11년 정월 8일(己亥). 해당 上奏에는 "滿官則有納贖之例"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土黑勒威勒, 곧 罰銀을 의미한다. 참고로 乾隆三修 漢文本 『清太宗實錄』은 "罰을 거둔다(weile gaimbi)"를 罰銀 혹은 納贖, 罰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64) 宗室 王公에게 罰俸이 부과되는 사례로는 『清世祖實錄』 卷49 順治 7년 5월 3일(乙卯); 卷123 順治 16년 2월 17일(戊寅); 卷138 順治 17년 7월 17일(庚午). 마지막 사례는 罰銀을 罰俸으로 대체하고 있다.
65) 鄭天挺, 앞의 글, 103-104면; 『清聖祖實錄』 卷36 康熙 10년 5월 26일(丙子); 6월 8일(丁亥).

부터 몽골 王公들을 대상으로 軍規 등의 法度를 정하였다.[66] 해당 法令에서는 몽골 王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정한 숫자의 가축을 내는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康熙 연간부터 俸祿을 받는 王公들에 대해서는 罰馬 대신 罰俸이 적용되었다.[67] 俸祿을 매개로 "罰을 거두는" 행위, 즉 罰銀·罰馬가 罰俸으로 전환되는 공통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康熙 18년(1679) 王公의 家人이 關津을 점거하고 商民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親王에게는 罰銀 1만 냥, 郡王에게는 罰銀 5천 냥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罰銀이 계속 적용되었으며,[68] 乾隆 연간 잘못에 대해 정규 處分을 가하는 대신 養廉銀을 거두는 "議罪銀"이 나타나기도 했다.[69] "罰을 거두는" 방식의 처벌은 청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罰銀은 入關 이전부터 王公 및 官員에 대해 이루어진 처벌의 한 종류로서, 順治 연간 및 康熙 초년까지 활발히 부과되었다. 특히 入關 이후에는 罰銀이 罰俸과 마찬가지로 處分으로서 활용되었으며, 康熙 중기부터는 대부분 罰俸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清代의 處分 및 "罰을 거두는" 처벌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행이 정립되는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崇德 3년(1638), 명 공격에 동참할 것을 명령받은 조선이 끝내 청이 설정한 軍期를 맞추지 못하자(①), 清 太宗은 해명을 위해 파견된 領議政 崔鳴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구두로 전하였다.[70]

---

66) 楠木賢道, 『清初対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113-144면; 이선애, 「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 건륭 연간 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제46집, 명청사학회, 2016, 36-41면.

67) 島田正郎, 『清朝蒙古例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2, 790면, 858-859면.

68) 『清聖祖實錄』 卷83 康熙 18년 8월 11일(癸酉). 順治 8년 이후 宗室 親王의 1년 俸銀은 1만 냥, 郡王은 5천 냥이었으므로, 이는 罰俸 1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光緒大清會典事例』 卷248 戶部 俸餉 宗室俸祿,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80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2002, 17上-17下.

69) 孟姝芳, 앞의 글; 張世明·王旭, 「議罪銀新考」, 『清史研究』 2012年 第1期, 中國人民大學 清史研究所, 2012.

70) 『內國史院檔』 崇德 3년 10월 9일, 앞의 책, 2013, 634면. 漢文 번역은 『清太宗實錄』 卷44 崇德 3년 10월 9일(戊戌) 참고.

> 예부터 너희와 같이 항복한 나라의 사람이 軍期를 어겼을 때, 重罪로 다스려 王을 파하고 강등시킨 경우[wang nakabume wasimbuhangge]도 있다. 罰을 거둔 경우[weile gaihangge]도 있다. 내가 너를 한 번 살려주었는데 강등시키는 罪로 다스릴 도리가 있겠는가? 명나라를 치러 간 諸王과 버일러(beile, 貝勒)들이 돌아온 뒤, 생각건대 반드시 너의 罪를 의논할 것이다[simbe weile gisurembi]. 그때 罪를 크게 받을지, 작게 받을지를 어찌 알겠는가?

여기서 홍타이지는 명백히 宗室 王公 및 몽골 王公의 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入關 이전부터 宗室 王公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降等·罰銀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항복한 나라의 사람", 즉 몽골 王公들의 경우 軍期를 어기거나 出兵하지 않으면 정해진 액수의 말과 낙타를 내도록 天聰 3년(1629)의 禁令으로 정해져 있었다.[71]

홍타이지는 王位를 갈거나 爵位를 강등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罰을 거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실제로 崔鳴吉이나 馬福塔(Mafuta, 馬夫大)의 언급에 따르면, 홍타이지의 의도는 仁祖의 잘못을 "推考"하고 몽골의 예와 같이 罰로 말이나 土産을 거두는 것이었다고 한다.[72] 法令을 어긴 데 대해 罪를 논의하고, 罰을 거두는 청의 법률적 관행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때는 홍타이지가 宗室 諸王이 잘못을 했을 때도 自新하도록 하였으니 仁祖의 잘못도 용서하겠다고 함으로써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실현되지 않았지만,[73] 李敬輿·李明漢 등 瀋獄에 연루된 조선 臣僚들에 대해서는 崇德 8년(1643) 罰銀으로 처벌한 사례가 나타난다.[74]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順治 13년(1656)의 일이다(③).[75] 順治 11년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淸人을 살해한 사건에 대

---

71) 禁令의 몽골어 원문 및 일본어 번역은 岡洋樹, 『淸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硏究』, 東京: 東方書店, 2007, 34-35면. 漢文은 『淸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3월 2일(戊午).

72)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11월 23일;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6월 26일(壬子).

73) 「宥師期遲悞勅(滿月箇來 己卯)」, 『同文彙考』 別編 卷4 軍務.

74) 『瀋陽狀啓』 癸未年(1643) 2월 14일.

75) 이하 본 문단 및 다음 문단의 내용은 모두 「禮部知會免議及遣宮更查各官咨」,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에 따라 서술하였다.

해 淸의 刑部·都察院·大理寺는 犯人 및 책임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한편,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조선국왕 및 조선 官員들을 議處해야 한다고 上奏하였다. 이에 대해 順治帝는 刑部가 議處하여 아뢰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조선국왕 및 그 官員들을 어느 部에서 議處해야 할지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刑部에서는 禮部에 물어보았으나, 禮部에서도 원래 定例가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에 刑部는 題本을 올려 자신들은 見任 職官을 議處하는 例가 없으니 吏部에 넘겨 議處해야 할지, 아니면 대상자가 조선국왕 및 職官이므로 禮部에 넘겨 議處해야 할지 皇帝의 뜻을 물었다. 順治帝는 禮部에 넘겨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안은 禮部로 이첩되었다.

이를 보면 淸에서 조선국왕 및 그 신하들을 處分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順治帝의 결정으로 禮部에서 그들에 대한 議處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는 禮部의 전담사항이 되었다. 康熙 연간에는 勅使를 파견하면서 그로 하여금 조선국왕을 察議하도록 하기도 했고(⑯), 勅使가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 부과를 요청하기도 했지만(⑯·⑱), 이 경우에도 禮部에서 覆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조선국왕에 대한 處分 방식이 罰銀으로 통일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順治 13년 禮部에서는 罰銀이나 罰馬와 같이 罰로 물건을 거두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했고, 조선국왕이 바치던 歲幣를 기준으로 물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禮部가 罰로 부과하자고 주청한 물품을 歲幣의 액수와 비교하면 각각 銀 1천 兩(100%)·豹皮 50張(50%)·獺皮 100張(25%)·大紙 1천 卷(50%)·腰刀 10把(100%)에 해당하고, 順刀 10把는 順治 4년(1647)에 면제된 품목이다.[76] 이는 入關 이전 "土産을 贖으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했던 馬福塔의 말과 일맥상통한다.[77]

이후 청은 조선국왕에게 土産을 罰로 거두기보다 宗室 王公에 대한 罰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順治 14년(1657) 麟坪大君이 이끌었던 使臣 일행 중 한 명이 焰硝를 밀수한 사건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罪

76) 歲幣의 액수는 全海宗, 「淸代 韓中朝貢關係考」,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 81면의 表 6 참고.
77)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6월 26일(壬子).

를 묻기 위해 파견된 勅使는 孝宗에게 大君이 죄를 지으면 朝鮮에서는 어떤 罰을 주는지를 물었다. 孝宗이 前例가 없다고 답하자, 勅使는 大君의 품계를 물었고, 孝宗은 청의 親王과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勅使는 조선의 법으로 論斷해야겠으나 前據가 없으므로 淸國의 법으로 논의하겠다고 하여 孝宗의 동의를 얻은 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78)

> 淸使가 말하기를,
> "貴國의 법을 알 수 없으나, 淸國의 법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親王·俊王[郡王] 가운데 만약 罪가 있으면 혹 奪爵하고 罰金을 물리는 경우가 있고, 혹 奪爵만 하고 罰金은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 罰金을 물리고 奪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律을 적용해야겠습니까?"
> 하니, 上이 이르기를,
> "오직 여러 大人들이 처리하기에 달렸소."
> 하였다. 淸使가 말하기를,
> "大君이 罪를 입는 것은 이미 前據가 없으나, 大國의 法으로 말하면 罰金 2천 냥일 듯합니다."

이는 大君에 대한 罰銀이었지만, 청에서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을 어떻게 생각하고 집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된다. 즉 청에서 王公에게 處分으로 降等·革職 및 罰銀을 부과하고 있으니, 麟坪大君에게도 청의 法에 따라 罰銀을 부과하도록 주청하겠다는 것이다. 당시의 국왕 孝宗 역시 이러한 처리방식을 인정하고, 勅使들과 공동으로 罰銀 2천 냥을 부과하기를 요청하는 奏文을 올렸다.79) 이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에도 宗室 王公에게 부과되어 온 罰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康熙 연간 청은 조선국왕에게 宗室 親王과 비슷한 액수의 罰銀을 부과하였다. 禮部는 조선국왕에 대해 罰銀으로 1천 냥(⑧), 5천 냥(⑩·⑫·⑭·⑰), 1만 냥(⑦·⑬·⑮·⑱·⑳)을 각각 부과할 것을 주청하였고, 실제 부과된 액

78) 『孝宗實錄』 卷18 孝宗 8년 4월 2일(甲戌).
79) 「陳科斷買硝各犯擬律使臣奏(互陳奏)」, 『同文彙考』 原編 卷63 犯禁 一; 『孝宗實錄』 卷18 孝宗 8년 4월 2일(甲戌).

수는 5천 냥(⑦・⑭), 2만 냥(⑯)이었다. 淸代 宗室 親王의 俸銀이 1만 냥이었음을 감안하면,[80] 앞의 액수는 각각 1개 土黑勒威勒[=10%] 및 罰俸 6개월・1년・2년에 해당한다. 淸代 조선국왕은 宗室 親王과 거의 대등한 의례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는데,[81] 그러한 위상이 罰銀의 부과에도 원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근거로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성립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崇德 3년 청은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 과정에서 宗室 및 몽골 王公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①). 그러나 몽골 王公들과는 달리 조선국왕은 청의 封爵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封爵을 降等하는 방식의 처벌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 단계에서 仁祖를 폐위시킬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罰로 土産을 거두는 방식의 처벌을 상정하였으나, 일단은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나 順治 10년에 禮部가 조선국왕을 議處하려 했듯이(②), 조선국왕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은 유지되고 있었다.

順治 13년 최초로 조선국왕을 議處하게 되자 禮部는 조선의 歲幣를 기준으로 삼아 罰物의 품목 및 액수를 결정하였다(③). 그러나 順治 14년 麟坪大君에게 청의 宗室 王公의 전례에 따라 罰銀 2천 냥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조선국왕에 대한 處分도 罰銀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康熙 5년 처음으로 실제 處分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⑦), 禮部는 宗室 親王의 罰銀을 기준으로 하여 親王의 1년 俸銀에 해당하는 罰銀 1만 냥 부과를 주청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宗室 王公에 대한 罰銀은 康熙 10년에 罰俸으로 통합되었으나, 조선국왕에게는 애초에 俸祿이 지급되지 않았고, 宗室 王公에게도 康熙 18년까지는 罰銀이 함께 부과되고 있었으므로, 조선국왕에게는 이후에도 여전히 罰銀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康熙 20년(1681) 康熙帝가 조선국왕에게 罰銀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⑬), 大學士 明珠는 "전에도 이러한 例가 있었

80) 『光緖大淸會典事例』 卷248 戶部 俸餉 宗室俸祿, 앞의 책, 17上.

81) 청은 조선국왕에게 높이 3.5寸의 龜鈕金印을 주었는데, 이는 親王世子의 아래, 郡王의 위에 해당하며, 駝鈕金飾銀印을 받은 여타 조공국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대우를 보여주는 것이다. 片岡一忠, 『中國官印制度硏究』, 東京: 東方書店, 2008, 307-312면.

으나, 免罰한 때가 많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82] 이는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이 확실히 관행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康熙 연간의 만주어 起居注는 청에서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을 入關 이전부터의 罰銀, 즉 "(정해진) 罰을 거두는[(tuhere) weile gaimbi]" 행위와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康熙 30년(1691) 조선인의 犯越・殺人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⑱), 禮部는 康熙帝에게 조선국왕에게 "銀 1만 냥의 罰을 거두고자 합니다(emu tumen yan menggun i weile gaiki)."라고 청했으며, 康熙帝 역시 "銀 1만 냥의 罰을 거두는 것을 관대하게 면해주어라(emu tumen yan menggun i weile gaire be oncodome guwebu)."라고 명하였다.[83] 이는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이 崇德 연간부터 康熙 연간까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되었으며,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져 왔음을 잘 보여주는 사료이다.

雍正 연간에 이르면 조선국왕에 대한 處分이 『大淸律例』에 규정되기에 이른다. 즉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는 다음 條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4]

무릇 盜賊이 朝鮮國에 가서 劫掠하면 조선국왕은 즉시 추격하여 죽이거나 산

82) 『康熙起居注』 10冊 康熙 20년 2월 10일(甲午), 앞의 책, 2009b, 4614면.

83) 『滿文本淸聖祖起居注稿: 康熙三十年六月一日至二十九日』(內閣大庫檔案 167311-001) 康熙 30년 6월 17일, 臺灣 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 所藏, 10b-11a. 해당 부분 한문본 起居注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康熙起居注』 2冊 康熙 30년 6월 17일, 앞의 책, 2009a, 799면. "又禮部議覆 (…) 應罰王李焞銀一萬兩. 上曰, 李焞從寬免罰銀一萬兩." 『滿文本淸聖祖起居注稿』의 열람에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이상훈 學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한다.

84) 「私出外境及違禁下海」 條例, 『大淸律例』 卷20 兵律 關津, 앞의 책, 340면. "凡盜賊前往朝鮮國劫掠者, 該國王卽行追拿殺戮生擒解送. 其飄風船隻人內, 實係有票並未生事者, 照例送回. 若無票匪類, 妄行生事, 該國王卽照伊律審擬咨部, 具題請旨完結. 倘伊國防汛之員不能擒獲, 題參治罪, 該國王一併交部議處." 해당 條例는 康熙 61년에 定例가 되고, 雍正 3년에 律例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大淸律例通考』 卷20 兵律・關津・私出外境及違禁下海第十九條例文, 馬建石・楊育裳 主編, 大淸律例通考校注,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2, 621-622면. 그러나 康熙 61년 12월 20일 당시 雍正帝의 재가를 얻어 결정된 사항에는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없었다. 「禮部知會嚴禁無票漁採上諭咨」, 『同文彙考』 原編 卷61 犯越 十三 上國人; 『淸世宗實錄』 卷2 康熙 61년 12월 10일(辛酉); 20일(辛未). 조선국왕을 議處한다는 내용은 雍正 5년 11월 21일에야 雍正帝의 諭旨로 추가되어 조선에 문서로 전달되었다.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同文彙考』 原編 卷61 犯越 十三 上國人; 「原奏」, 『同文彙考』 原編 卷61 犯越 十三 上國人; 『淸世宗實錄』 卷63 雍正 5년 11월 21일(癸酉).

> 채로 사로잡아서 解送해야 한다. 바람에 표류한 배에 탄 사람으로서 실제로 票文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자는 例에 따라 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票文이 없는 匪類가 망령되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선국왕은 즉시 그 나라 律[伊律]에 따라 審擬하여 [禮]部에 咨文을 보내고, [禮部는] 題本을 올려 諭旨를 청해서 完結하도록 한다. 혹시 그 나라의 해안을 방비하는 官員이 사로잡지 못하면 [禮部는] 題本을 올려 탄핵해서 治罪하도록 하고, 조선국왕도 함께 [禮]部에 넘겨 議處한다[該國王一併交部議處].

해당 條例는 淸人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의 처리방안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선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조선국왕 역시 議處의 대상이 됨을 명문화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條例는 海上犯越 사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전부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관행을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비록 이후 해당 條例 자체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나,[85]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는 乾隆 연간까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6]

이상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청대 處分 제도의 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入關 이전부터 宗室 및 몽골 王公에 준하여 상정되었으며, 順治·康熙 연간을 거쳐 處分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雍正 연간에는 『大淸律例』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실제 罰銀이 부과되는 사안은 雍正 연간 이후 출현하지 않았지만, 順治·康熙 연간에 확립된 제도 및 관행은 乾隆 연간까지도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4. 議處·罰銀의 법적 성격과 조선국왕의 위상

淸代 處分이 王公이나 官員 등의 잘못에 대한 법적 징계조치라면, 조선국왕

85) 淸末의 薛允升은 이 조항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薛允升, 「私出外境及違禁下海」, 『讀例存疑』 卷22, 兵律 關津. "此門所載各條, 不行者十有八九, 此二條及臺灣各條, 則尤不忍置議." 淸人의 海洋犯越 및 그에 대한 조선의 대처에 대해서는 남이슬, 「康熙年間 淸國人의 海洋犯越과 朝·淸 양국의 대응」, 『明淸史硏究』 제44집, 명청사학회, 2015를 참고.

86) 乾隆 연간 조선인의 犯越 사건에 대해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가 요청된 일례로는 「禮部知會免議及首犯正法餘犯監候秋審咨」(乾隆 29), 『同文彙考』 原編 卷59 犯越 十一 我國人.

에 대한 處分 역시 본질적으로 법적 성격을 띠며, 청의 규범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은 어떤 명분으로 조선국왕을 議處하고, 또한 罰銀을 부과하였을까?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 명분

연번	분류	연도	청에서 제시한 처벌 명분	출전
①	軍務	崇德 4년(1639)	"律以軍法, 殆不可恕."	「宥師期遲悞勅(滿月箇來, 己卯)」, 『同文彙考』 別編 卷4 軍務.
③	犯越	順治 13년(1656)	"朝鮮屬在外藩, 自宜恪守朝廷法令 (…) 該國王理應擬罪具奏, 明知不奏, *殊失事上敬愼之道* (…) 今國王*疏忽之咎*難辭."	「禮部知會免議及遣宮更查各官咨」,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
⑤	文書	順治 18년(1661)	"殊非外國敬事上國之體, *甚屬悖理*."	「禮部知會咨內王旨字免議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⑦	逃人	康熙 5년(1666)	"逃人之律, 國法甚嚴."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丙午 11월 29일.
⑧	貢物	康熙 6년(1667)	"在事各官, 難免*疎忽之咎* (…) 該王亦難辭咎."	「禮部知會貢紙不堪免罰及使臣著議奏咨(丁未, 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20 節使 三.
⑨	貢物	康熙 11년(1672)	"將*貢物怠忽* (…) *殊失恭敬之意*."	『同文彙考』 原編 卷20, 節使 三, 「禮部知會幣品不符議令回奏奉旨寬免咨(互飭諭)」
⑩	禁物	康熙 16년(1677)	"乃竟不議及干犯國法之處 (…) 盡行隱匿, 朦溷巧飾具奏."	「禮部知會寬免罰銀咨」, 『同文彙考』 原編 卷33 陳奏 一.
⑪	禁物	康熙 16년(1677)	"殊干法紀, 俱係該王不將來使陪臣等嚴行曉諭, 以致從役任意違法妄行."	「【丁巳】禮部知會年貢行員役私帶地圖交該國審奏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64 犯禁 二.
⑫	文書	康熙 18년(1679)	"應行廻避字*揉*, 不行廻避, *殊欠敬愼*."	「【己未】禮部知會冬至表內犯回避字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⑬	犯越	康熙 20년(1681)	"今仍復不悛, 縱放下人恣意違禁越江盜取木皮, 殊干法紀."	「禮部知會寬免咨(辛酉)」, 『同文彙考』 原編 卷50 犯越 二 我國人.
⑭	文書	康熙 21년(1682)	"述旨舛錯 (…) 不將姓名字寫出, (…) *殊屬不合*." "*敬愼之道殊失*."	「禮部知會奏文違式罰銀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康熙起居注』 康熙 21년 9월 28일(壬申).
⑮	貿易	康熙 24년(1685)	"宜益加恭謹, 勉圖報稱, 一應事務, 悉遵成例 (…) 推諉具題, *殊屬不合*."	「禮部知會不許停市及寬免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45 交易 一.
⑯	犯越	康熙 25년(1686)	"*乃將疏忽之心*, 仍不悛改, 怠玩從事. 平日將伊人民, 不行嚴加禁飭, 以致 (…) 殊干法紀."	「禮部知會罰銀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⑰	文書	康熙 29년(1690)	“應行廻避字**揉**, 不行回避. 又稱德冠後官, 俱屬違例, *殊欠敬愼*.”	「【己巳】禮部知會准請及奏文違式咨(見封典)」,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⑱	犯越	康熙 30년(1691)	“自應抒誠, 恪守成憲, 以盡爲臣事上之道 (…) 今仍復不悛, 疏放民人越江採蔘 (…) 殊干法紀.”	「禮部知會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52 犯越 四 我國人.
⑲	禁物	康熙 30년(1691)	“既遵奉科條, 戒飭臣民, 相應免議.”	『康熙起居注』 康熙 30년 7월 5일 (戊子).
⑳	文書	康熙 34년(1695)	“表箋所關甚重, 理宜詳愼, 今該國王所奏箋內用字不合, *殊失敬愼之道*.”	「禮部議罰停賞俱從寬免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 조선국왕의 잘못을 명시하지 않거나(④, ⑥, ㉑) 단순 사실만 기술한 경우(②)는 제외하였음.
** 밑줄 및 이탤릭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청에서 조선국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은 상당히 고정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국왕이 몸소 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 臣民으로 하여금 청의 법령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경우이다(밑줄 표시). 둘째, 소홀하였거나, 敬愼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이탤릭체). 두 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함께 쓰이기도 한다.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청은 “國法”, “法紀”, “成例”, “成憲” 등 청의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를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사유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크게 法紀를 어겼다[殊干法紀]”는 표현은 官員의 違法을 탄핵하거나, 犯法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경우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87]

그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선국왕이 위반한 규정이 무엇인지가 명백히 밝혀져 있다. 예를 들어 崇德 4년(1639) 홍타이지는 軍期에 늦은 罪는 軍法으로 다스리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면한다고 하였다(①). 여기서 언급된 軍法은 天聰 3년(1629)에 몽골 王公들을 대상으로 정한 禁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明에 대한 遠征이 끝날 때까지 出兵하지 않을 경우 말 1000마리·낙타 100마리를 罰로 내게 되어 있었다.[88]

87) 『六部成語』에는 “有干法紀(fafun kooli be neciheo)”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의미이다. 『六部成語』 吏部成語, 永志堅 整理, 六部成語(滿漢合璧),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6, 33면.
88) 주 71) 참조.

또한 康熙 5년(1666) 安秋元 사건(⑦) 때 康熙帝는 조사를 명하면서 "逃人을 숨겨주는 데 대한 禁令은 立法하기를 심히 엄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89] 최종 處分을 전하는 諭旨에도 "逃人의 律은 國法이 심히 엄하다."라고 명시하였다.[90] 이는 조선국왕에 대한 罰銀 부과에 逃人律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은 旗人의 奴僕에 대한 권리를 매우 중시하여 逃人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91] 康熙 5년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逃人을 숨겨준 사람은 責 40板을 치고 얼굴에 刺字하며, 자신과 家屬・財産을 모두 逃人의 원래 주인에게 주게 되어 있었다.[92] 現任 漢人 文武官員이나 進士・擧人 등이 逃人을 숨겨주면 革職되고, 妻子와 함께 尙陽堡로 流徙되었으며, 財産은 入官되었다.[93] 한편 관할 지역에서 逃人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州縣官은 革職되고, 巡撫도 罰俸 9개월에 처해졌다.[94] 外藩 몽골의 王公들 중에서도 俸祿을 받는 경우, 逃人을 숨겨준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罰俸 1년에 처해졌다.[95]

禮部가 安秋元 사건 당시 실무를 담당한 鄭太和 등에게 원래 官爵을 削奪하고 極邊으로 定配하려는 처벌을 내리려고 했음을 감안하면,[96] 鄭太和 등에게는 漢人 文武官員의 逃人 隱匿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顯宗에게는 몽골 王公이나 巡撫의 失察 규정을 선례로 삼아 罰銀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97]

---

89) 「【丙午】頒遣官查審犯買碉黃容隱逃人勅(戶部侍郎雷虎來. 互刷還, 勅諭)」, 『同文彙考』 原編 卷64 犯禁 二. "窩逃之禁, 立法甚嚴."

90)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丙午 11월 29일, 앞의 책, 218면. "逃人之律, 國法甚嚴." 『通文館志』 卷9 紀年 顯宗 7년에는 해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91) 劉家駒, 『淸朝初期的八旗圈地』,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64, 107-122면. 吳愛明, 「淸督捕則例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는 官撰 法書에서 逃人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附錄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本稿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92) 吳愛明, 앞의 글, 192면 附錄二. "督捕則例, 例 002.09: 順治十四年(1657) 題准"

93) 같은 글, 212면 附錄二. "督捕則例, 例 075.02: 順治十一年(1654) 議定"

94) 같은 글, 219면 附錄二. "督捕則例, 例 098.10: 順治十五年(1658) 又題准"

95) 같은 글, 240면 附錄五. "理藩院浦逃例, 藩捕 010: 順治五年(1648) 議准"

96)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丙午 11월 29일, 앞의 책, 218면. "鄭太和等, 亦當依議削奪官爵, 極邊定配, 旣矜該王自行認罪, 鄭等俱着寬免."

97) 다만 『督捕則例』의 규정이나, 逃人 1천여 명을 은닉했던 平南王 尙可喜・靖南王 耿仲明이 각각 罰銀 4천 냥에 처해지고, 그 휘하의 將領들 역시 折贖하도록 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淸使들이 조선 臣僚들에 대해 死罪까지 거론했던 것은 분명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李孟衡, 앞의 글, 110면.

또한, 犯越・禁物 사안에서 청은 조선국왕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臣民을 잘 단속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國法・法紀를 어기도록 방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의 입장에서 조선국왕은 스스로 청의 法을 준수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청의 禁令을 申明하여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였다. 이는 다음의 사료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太宗皇帝께서 立法하신 것이 매우 분명하므로, 너희 나라 군신들은 함께 이를 삼가 준수해야 할 것이다[太宗皇帝立法甚明, 爾國君臣共宜恪守]. (…) 너는 일국의 주인으로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응당 禁令을 申明하고, 일이 생기면 응당 상세히 죄명을 정해야 한다[爾爲一國之主, 事前當申明禁令, 事發當詳擬罪名]. 하물며 짐은 柔遠의 뜻을 품고 있어서, 越境 문제에 대해서 누차 관대함을 베풀었으니, 너희 나라는 마땅히 은혜의 마음을 품고 法을 받들어야 한다.98)
>
> 생각건대, 朝鮮國王 姓某는 대대로 皇上의 洪恩을 입었으니 응당 정성을 다하여 成憲을 삼가 따름으로써[恪守成憲] 신하로서 위를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지금 또 깨닫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니, 法紀를 심히 위반하였습니다[殊干法紀]. 이러한 연유에서 朝鮮國王 姓某에게 은 1만 냥을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 가합니다.99)

청은 조선국왕 자신이 청의 法規를 어겼을 때는 그 자신의 책임을, 신하들이 禁令을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선국왕이 청의 法令의 적용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悖理", "不合", "疎忽", "殊失敬愼" 등의 명분은 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들 표현 역시 官員을 處分하는 사유로 빈번히 등장하는 구절이었다.100) 아울러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사안 중 文書의 違式은 청

98) 「遣官詳確擬議勅(內大臣吳拜等來, 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49 犯越 一 我國人.
99) 「禮部知會寬免咨(辛酉)」, 『同文彙考』 原編 卷50 犯越 二 我國人.
100) 韓堃 等, 「吏部處分過之滿洲官員事件文冊」에 기록된 順治 11-12년 滿洲 官員에 대한 處分 사례 64건 중 "疏忽"・"怠忽"・"大不合理"・"於理不合"・"殊不合理"・"甚不合理"가 총 27건이다. 敬愼의 부족을 지적한 예로는 「淳安縣奏報順治六至九年分起運錢糧數目日期」(A016-011, B8685-B8708),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明清檔案』 16,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批紅]該部院知道. 冊併發. 這淳安奏本, 比式太長, 內數行各多, 一字無小, 日無貼黃, 又失填縣印官姓名, 殊欠敬愼, 著議奏."

내부에서 일찍부터 處分의 대상으로서, 처벌 규정도 정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順治 11년(1654)에는 皇帝에게 올리는 문서에 이름이나 職名을 쓰지 않아서, 혹은 글자를 빠뜨려서 土黑勒威勒을 부과받은 사례들이 나타난다.[101] 康熙 15년(1676)에 반포된 『欽定則例』의 규정은 皇帝에게 올리는 本章에 官銜이나 글자를 잘못 쓰거나 첨가하면 罰俸 6개월, 官員이 慶賀表文・朝覲計冊을 잘못 쓰거나 글자를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 罰俸 1년에 처하고, 職名을 나열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범하면 罰俸 6개월에 처하도록 했다.[102] 실제 康熙 연간의 定例 및 관련 成案을 수록하고 있는 『定例成案合鐫』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總督・巡撫 등이 罰俸을 부과받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103]

이를 감안하면 조선국왕이 청에 보내는 문서에 청의 御諱를 범하거나(⑫・⑰), 이름을 적지 않거나(⑭), 부적절한 語句를 넣었다고 간주된 데(⑰・⑳) 대하여 禮部에서 罰銀 5천 냥에서 1만 냥, 즉 親王에 대한 罰俸 6개월-1년에 상응하는 액수를 부과할 것을 주청한 것은 청 내부의 규정과 비슷한 수준의 處分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판단할 때,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사례 중 대부분은 청의 법적 규정을 그대로 조선국왕에게 적용한 것으로서, 조선국왕 자신의 違法 책임이나 조선 臣民이 청의 법령을 어긴 데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은 조선국왕이 청의 法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處分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간주했던 것이다.

청의 法令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만 보면 조선국왕과 청의 王公・官員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康熙 24년(1685)에 일어난 三道溝 사건 당시, 康熙帝는 조선에 護軍統領 佟寶를 勅使로 파견하여 조선국왕의 잘못을 엄히 살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고, 동시에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官兵을

101) 韓垈 等, 「吏部處分過之滿洲官員事件文冊」, 앞의 책, 2a-5b.

102) 孫綸, 「錯悞本章」, 『定例成案合鐫』 卷3 公式, 2b-3a; 「表文覲冊舛錯等項」, 같은 책, 3a. 『定例成案合鐫』은 해당 규정이 모두 康熙 15년에 반포된 『欽定則例』에 수록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03) 孫綸, 「參本貼黃未寫姓名成案」, 『定例成案合鐫』 卷3 公式, 3a; 「本內無貼黃成案」, 같은 책, 3a-3b; 「本章違式成案」, 같은 책, 3b; 「本內失寫官銜成案」, 같은 책, 3b. 『定例成案合鐫』을 비롯한 坊刻本 則例集의 사료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谷井陽子, 「清代則例省例考」, 『東方學報』 第67冊,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95, 205-210면을 참고.

동원한 奉天將軍 伊巴漢의 잘못도 그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실제로 佟寶는 조선국왕에게 罰銀 2만 냥을 부과해야 한다고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題本으로 伊巴漢 등을 擬罪한 바를 보고하였다.[104] 결국 奉天將軍 伊巴漢과 副都統 穆泰 등은 각각 降二級留任에 처해졌다.[105] 勅使에 의해 議處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선국왕과 奉天將軍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淸人이 조선으로 犯越하는 사례에 대한 청의 대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雍正 5년(1727), 雍正帝는 淸人이 조선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관할 將軍·督撫·提鎭을 무겁게 議處하도록 하고, 조선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조선국왕 역시 함께 議處할 것임을 조선에 알리도록 하였다.[106] 청의 將軍·督撫·提鎭과 조선국왕이 나란히 議處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조선국왕이 청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조선에서도 민감하게 인식되었다. 崇德 3년 홍타이지가 軍期를 맞추지 못한 데 대해 仁祖의 잘못을 의논하겠다고 했을 때(①), 청에서 온 使臣들이나 仁祖·崔鳴吉 모두 이를 刑罰을 대신하는 "推考"·"贖徵"으로 이해하였다.[107] 또한 조선은 入關 전후 罰銀이 청의 王公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데,[108] 이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던 당국자들은 청의 罰銀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109]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罰銀을 부과받았을 경우 조선에서는 원래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罰銀으로 贖하게 해준 데 謝

104) 「禮部知會罰銀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105) 『康熙起居注』 19冊 康熙 25년 2월 22일(丙午), 앞의 책, 2009b, 9671면.
106)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同文彙考』 原編 卷61 犯越 十三 上國人; 「原奏」, 『同文彙考』 原編 卷61 犯越 十三 上國人; 『淸世宗實錄』 卷63 雍正 5년 11월 21일(癸酉).
107)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11월 23일;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6월 26일(壬子). 조선에서 推考란 원래 審問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7세기부터 관원에 대한 警責用 처벌을 지칭했다. 推考를 받은 관원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笞刑·杖刑에 해당하는 贖木·贖錢을 납부해야 했다. 김진옥, 「'推考'의 性格과 運用」,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矢木毅, 「朝鮮時代における三司の言論と官人の處罰」, 『東方學報』 第89冊,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14, 19-22면.
108) 『瀋陽狀啓』 辛巳年(1641) 3월 23일; 『仁祖實錄』 卷45 인조 22년 4월 14일(辛未).
109) 『顯宗實錄』 卷13 현종 8년 1월 12일(丁亥); 2월 11일(丙辰); 『顯宗改修實錄』 卷16 현종 8년 1월 12일(丁亥). 다만 해당 사료에서 許積은 諸王뿐만 아니라 皇帝 또한 罰金을 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恩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청에 보내고 있었으며,[110] 국내적으로도 국왕에 대한 罰銀을 "贖金"으로 인식하였다.[111]

그러나 罰銀이 법적인 처벌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이 이에 순응하거나 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조선 조정은 事大文書에 청의 御諱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였지만,[112] 문서에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議處·罰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113]

청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공유하고 있던 조선 朝野의 입장에서, 조선의 至尊인 국왕이 오랑캐에 불과한 청 황제에 의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극도의 치욕으로 여겨졌다.[114] 따라서 조선은 가급적 罰銀 부과를 피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康熙 26년 三道溝 사건으로 인해 肅宗에게 罰銀 2만 냥이 부과되자 陳奏兼謝恩使 鄭載嵩 등은 呈文을 올려 이를 취소해주기를 청하였다.[115]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역효과를 초래하기 쉬웠다. 당시 禮部에서는 呈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題本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主弱臣强"하기 때문에 使臣이 그 임금에게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呈文을 올렸다고 하며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鄭載嵩 등을 처벌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116]

이에 따라 조선은 罰銀을 회피하기 위해 정식 문제제기보다 비공식적인 수단을 활발히 동원하였다. 예를 들어 康熙 5년(1666) 安秋元 사건 당시에는 교섭을 위한 뇌물 용도로 은 5천 냥을 준비하였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지

---

110) 일례로 「謝述旨違式罰銀表」,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王法具嚴, 寧逃三尺之律, 詔旨許贖, 特恕一眚之辜. 薄罰纔止於納鍰, 洪造實出於舍垢."

111) 『肅宗實錄』 卷21 숙종 15년 12월 19일(辛巳).

112) 『承政院日記』 숙종 15년 12월 19일(辛巳).

113) 『肅宗實錄』 卷13 숙종 8년 11월 24일(丁卯); 卷22 숙종 16년 1월 15일(丁未); 2월 25일(丁亥); 『承政院日記』 숙종 15년 12월 19일(辛巳); 숙종 16년 1월 5일(丁酉).

114) 『顯宗實錄』 현종 8년 1월 30일(乙巳); 『承政院日記』 현종 8년 2월 7일(壬子); 『肅宗實錄』 卷16 숙종 11년 8월 16일(甲辰); 『肅宗實錄補闕正誤』 卷17 숙종 12년 4월 13일(丁酉).

115) 「呈禮部文」,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116) 「禮部知會呈文陪臣免嚴拿發與該國治罪咨(互飭諭)」,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三 我國人. 鄭載嵩 등의 呈文 및 이에 대한 청의 반응은 李花子, 앞의 책, 97-99면 참고.

만 수고한 淸 衙譯들에 대한 보수로 2천 냥을 지출하였다.[117] 뇌물은 이후에도 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제기된 문제를 미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118] 罰銀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뇌물의 액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罰銀은 물질적 손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왕의 위신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은 아예 청에서 조선국왕을 議處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三道溝 사건 이후 조선은 厚州鎭을 혁파하고, 파수를 설치하며, 人蔘의 대외교역을 차단하고, 犯越者를 적발하지 못한 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犯越 금지 정책을 폈다.[119] 또한 事大文書에 청의 御諱 및 王旨・瀋陽 등의 표현, 문제가 될 만한 글자의 사용도 피하도록 하였으며,[120] 皇旨의 인용에도 주의하였다.[121]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국왕이 처벌을 받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었을 뿐, 조선은 스스로 청의 禁令을 실천한다는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罰銀 부과가 일상화되면서 조선은 이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罰銀 5천 냥을 납부한 安秋元 사건 이듬해인 顯宗 8년(1667) 대만에서 청에 대항하던 鄭經 휘하의 林寅觀 등이 조선에 표류해왔을 때,[122] 幼學 成至善 등은 그들을 청으로 압송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罰金 이외에 무슨 罪를 더 주

117) 당시의 비공식 교섭 과정은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丙午 11월 9일, 앞의 책, 200-201면; 15-25일 및 27-30일, 같은 책, 204-221면; 12월 3-4일, 같은 책, 224-230면.

118) 예를 들어 『肅宗實錄』 卷13 숙종 8년 1월 7일(乙卯); 卷29 숙종 21년 10월 24일(癸丑). 이를 위해 조선 사신들은 機密費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張存武, 「朝鮮對淸外交機密費之硏究」, 앞의 책, 1987d, 112-126면.

119) 李花子, 앞의 책, 104-108면. 또한 「犯越」, 『新補受敎輯錄』 卷2 刑典의 처벌 규정들을 참고.

120) 「事大」, 『百憲摠要』 卷2, 法制處 編, 法制處, 1979, 458면. "卽今所避諱者, 淸・玄・燁・胡・胤・祕等字避. 瀋陽稱盛京, 或稱奉天府. 王旨文字, 勿用. 我國京城之京字, 勿用."; 「三節賀表」, 『同文彙考』 補編 卷8 事大文書式. "玄・燁・胤・禛・弘・曆・胡等字, 竝避."

121) 『英祖實錄』 卷15 영조 4년 1월 6일(丁巳).

122) 林寅觀 일행의 표류와 송환 과정에 대해서는 金文植,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傳信錄』」, 『震檀學報』 제115호, 震檀學會, 2012, 100-105면; 양지하, 「17세기 중엽 조선에 표류한 鄭成功 계열 海商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인식과 그 성격」, 『梨花史學硏究』 제50집, 梨花史學硏究所, 2015, 13-28면; 김우진, 앞의 글, 15-29면; 우경섭, 「명청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 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제8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9, 56-63면 참고.

겠느냐고 하며 顯宗의 결단을 촉구하였다.[123] 또한 肅宗 11년(1685) 三道溝 사건 당시 罰金 이상의 사태가 있겠느냐고 묻는 肅宗에게 영의정 金壽恒은 청이 조선과 絶好하려 하지 않는 한 罰金보다 더한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124] 국왕에 대한 罰銀은 분명 치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조선은 이에 적응해 나갔던 것이다.

이상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朝淸 양국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청은 조선국왕이 청의 法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사례 중 대부분은 청 내부의 법적 규정을 그대로 조선국왕에게 적용한 것이었다. 청은 조선국왕이 청 내부의 王公·官員과 마찬가지로 청의 법적 관할권(legal jurisdiction) 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 역시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법적인 처벌로 인식하였으며, 갖은 수단을 기울여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의 法規에 순응한다기보다는 국가의 至尊인 국왕에 대한 모욕을 회피하고 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에 가까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청대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의 실제 사례, 제도적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朝淸 양국의 성격 규정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은 入關 이전부터 王公·官員의 잘못에 대해 "罰을 거두던(weile gaimbi)" 관행을 조선국왕에게도 적용하려 했고, 入關 이후에도 자신의 법적 규정을 조선국왕에게 적용하여 議處·罰銀을 가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밝힌 사실을 토대로 淸代 조선국왕의 위상과 그 통시적·공시적 특징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외교적 제재나 정치적 견제수단, 혹은 "無禮"에 대한 禮的 "問罪"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처벌로서의 성격을 갖

123) 『顯宗實錄』 卷14 현종 8년 7월 10일(壬子); 『顯宗改修實錄』 卷17 현종 8년 7월 10일(壬子).
124) 『肅宗實錄』 卷16 숙종 11년 11월 13일(己巳).

는 것이었다. 청은 조선국왕을 대상으로 나름의 법적인 관행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법적 처벌임을 조선에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8세기까지 조선국왕은 청의 법적 관할권 아래에 있었으며, 議處·罰銀은 그 제도적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 복속기 이래의 한중관계는 儀禮, 制度, 意識 차원에서 적지 않은 구조적 연속성을 띠며, 청 역시 조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몽골 복속기 및 明代의 전례를 의식하고 있었다.[125] 그러나 후술하듯이 淸代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즉 법적 처벌을 단순히 몽골 복속기 이래의 한중관계 구조를 반영하는 일례로 보기는 어렵고, 明代 이래 소위 冊封-朝貢 관계 속에서 君臣關係가 액면 그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126] 가령 명에서 조선국왕을 처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인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明代 내내 실제로 가능했는지, 조선국왕에 대한 징계가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明初 洪武帝는 조선에 대해 "聖教自由" 및 "儀從本俗, 法守舊章"이라는 언급으로 대표되듯 儀制와 法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태도를 취하였고, 釁端을 일으키지 않는 한 조선을 중국이 다스릴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었다.[127] 또한 洪武帝는 明初 빈번했던 고려·조선과의 외교적 충돌, 그의 입장에서는 고려·조선국왕의 '無禮'에 대해 무거운 歲貢을 물리거나 군사를 동원한 '問罪'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는 했어도,[128] 몽골 복속기의 고려국왕처럼 조선국왕 자신을 '中國'의 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한편 明 후기에는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해 參奏하여 견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국왕에 대한 극렬한 비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129] 하지만 淸代와 같이 조선국왕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 일상

125) 「【丁丑】定約條年貢諭(互飭諭)」, 『同文彙考』 別編 卷2 節使. "其所進表箋程式, 及朕降詔勅, 或有事遣使傳諭, 爾與使臣相見, 或爾陪臣謁見, 及迎送饋供之禮, 毋違明朝舊例."; 「責敗盟書(丁丑)」, 『同文彙考』 別編 卷3 飭諭. "大元時, 爾朝鮮納貢不絶, 今何一朝自高如是也?"

126) 계승범,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韓國史學史學報』 제26집, 한국사학사학회, 2012.

127) 최종석,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韓國史硏究』 제162호, 韓國史硏究會, 2013, 6-12면.

128) 夫馬進, 앞의 글, 2015a, 48-58면.

적으로 제기되거나 제도화되는 일은 없었으며, 罰銀과 같은 구체적 처벌 방식도 등장하지 않았다. 일례로 임진왜란 도중 조선국왕에 대해 가장 격렬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丁應泰 參奏 사건의 경우에도 丁應泰의 요청은 조선 君臣의 잘못을 "評議"하고 "查勘"하자는 데 그쳤으며,[130]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처벌 관행은 이후에도 정착하지 않았다. 즉 양국 관계의 현장에서 조선국왕에 대한 問罪와 譴責은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실제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던 몽골 복속기나 淸代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례를 淸代의 다른 조공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청과 비교적 마찰이 잦았던 安南의 경우 병력 동원을 불사한 국경분쟁이나 청의 침공 시도 등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131] 安南國王의 잘못을 議處하거나 罰銀을 부과하는 등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康熙 연간 安南에서 바친 貢物의 양이 문제가 되었을 때 禮部는 다만 『會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을 주청했을 뿐, 安南國王의 잘못을 議處하자는 주장은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康熙帝는 나아가 安南의 상황에 따라 貢物 및 貢期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會典』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132] 현실적으로 安南에 어떤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는 차치하고,[133] 청은 安南國王을 법적·제도적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청은 자신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군주들 중 유일하게 조

---

129) 『明宗實錄』 卷3, 명종 1년 4월 19일(乙巳), "郎中曰 (…) 事當參奏, 爾國王初政, 得譴於天朝矣."; 『宣祖實錄』 卷44, 선조 26년 11월 16일(丙寅), "經略呼臣語之曰 (…) 奉天子之明命, 何爲而不得爲? 國王猶可以參奏."

130) 『宣祖實錄』 卷104, 선조 31년 9월 21일(癸卯); 卷109, 선조 32년 2월 19일(己巳). 丁應泰 參奏 사건에 대해서는 鈴木開, 「丁應泰の變と朝鮮-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 『朝鮮學報』 第219輯, 朝鮮學會, 2011을 참고.

131) 17~18세기 淸과 安南의 관계 및 현안에 대해서는 鈴木中正, 「黎朝後期の淸との關係(一六八二-一八〇四年)」,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曲氏の擡頭から淸佛戰爭まで』, 山本達郎 編, 東京: 山川出版社, 1975를 참고.

132) 『淸聖祖實錄』 卷11 康熙 3년 정월 15일(戊寅); 卷26 康熙 6년 5월 27일(甲子); 卷106 康熙 21년 11월 8일(辛亥).

133) 雍正 연간 雲貴總督 鄂爾泰(Ortai)는 국경분쟁 당시 "尺土一民原非私有, 故賜之則爲藩臣, 收之則皆王土."라는 원칙론까지 제시하면서 安南에 대한 出征을 촉구했을 정도였다. 鈴木中正, 앞의 글, 414면.

선국왕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성은 청과 조선의 관계가 다른 조공국들과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달랐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은 조선과 琉球·安南에 대한 勅使의 인선이나 詔書 전달에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였는데,[134] 이는 청이 조선과 외번몽고를 崇德 연간에 형성된 '大淸' 질서의 일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135] 청은 入關 이전의 '大淸' 질서 속에서 조선국왕을 "罰을 거두는(weile gaimbi)" 처벌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고, 그것이 入關 이후에도 '大明' 질서에 속했던 다른 조공국들과는 달리 조선국왕에게 議處·罰銀을 시행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이다.

한편 청의 外藩에 편입된 몽골의 王公들 역시 청으로부터 議處 및 處分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 점에서는 조선국왕 역시 大淸帝國體制 내에서 外藩 몽골 王公과 유사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大淸' 질서에 속해 있었다고는 해도, 몽골을 포함한 청의 藩部와 조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다. 몽골 王公들과는 달리, 조선국왕은 청의 封爵 체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處分 중에서도 封爵을 降等하거나 封爵에 따르는 俸祿을 삭감하는 罰俸은 불가능했고, 오직 罰銀만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몽골 王公들은 屬民이 死罪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청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형벌을 집행해야 했던 데 반해,[136] 조선국왕은 청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청의 결정에 따라야 했으나,[137] 그 외의 경우에는 死罪의 집행을 포함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다.[138] 나아가 법적 처벌의 가능성만 공통될 뿐이지, 청 황제의 전적인 관할권 하에 있는 청의 일반 官

134) 丘凡眞, 「淸의 朝鮮使行 人選과 '大淸帝國體制'」, 『人文論叢』 제59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8; 김창수, 「청의 조서(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제8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3.

135) 丘凡眞, 앞의 글, 24-29면.

136) 단적으로, 順治 8년(1651) 차하르 親王 아부나이(Abunai)는 部人을 함부로 처형한 죄로 親王 爵位를 삭탈당하고 말 1천 필을 罰로 낼 위기에 몰렸다가 順治帝에 의해 처벌이 면제된 바 있다. 森川哲雄, 「チャハルのブルニ親王の乱をめぐって」, 『東洋學報』 第64卷 1·2號, 東洋文庫, 1983, 104-105면.

137) 예컨대 犯越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청의 秋審 제도 적용에 대해서는 矢木毅, 앞의 글, 2015, 160-164면 참조.

138) 같은 글, 165면.

員들과 조선국왕의 위치가 더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임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국왕에 대한 청의 법적 관할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청이 조선을 外藩(tulergi golo)과 구분되는 별개의 국가로, 조선국왕을 일국의 군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139] 청은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항복시킨 뒤에도 조선국왕을 "一國之王"으로 대우하였고, 그러한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140] 康熙帝 역시 조선국왕을 법적 처벌 대상으로 취급하면서도, 조선이 "外國(tulergi gurun)"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141] 또한 3장에서 제시한 『大淸律例』 條例에서는 淸人이 조선으로 犯越했을 경우 조선국왕에게 체포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의 범법자를 조선의 법[伊律]에 따라 審擬하도록 하여 조선국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142] 실제로도 조선 내부에서는 조선국왕이 立法・行政・司法의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청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청은 조선국왕에게 청의 法令을 준수하고 조선 臣民들에게도 禁令을 申明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길 경우 처벌을 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과 조선의 접촉면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이렇듯 외번몽고와 달리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던 淸代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征東行省丞相・駙馬・高麗國王이라는 복합적 위상을 가지면서 국내에서도 몽골 황제권에 의해 그 권한이 상대화되어 있었던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법적 위상과도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143]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淸代 조선국왕과 공통되지만,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처벌할 때도 명시적 제한을 받았으며, 몽골 황제의 聖旨를 어기거나 국왕

139) 청대 外藩(tulergi golo) 개념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李善愛,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104-110면.
140) 丘凡眞, 앞의 글, 20-21면; 本稿의 주 98) 참고.
141) 『康熙起居注』 康熙 24년 6월 25일(甲寅), 앞의 책, 2009b; 『滿文本淸聖祖起居注稿: 康熙二十四年六月一日至二十九日」(內閣大庫檔案 167307-001) 康熙 24년 6월 25일(甲寅),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所藏, 36a; 『康熙起居注』 18冊, 康熙 24년 7월 8일(壬戌), 앞의 책, 2009b, 9039면에는 康熙帝가 조선을 "外藩小國"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조선이 "國"임은 변하지 않았다.
142) 주 84) 참고.
143) 이명미, 앞의 책, 2016b.

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간주될 경우 체포·심문·유배에 이르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등 훨씬 직접적으로 몽골 제국의 법적 관할권 하에 포섭되어 있었던 것이다.144)

결론적으로, 조선국왕이 大淸帝國體制 내에서 지녔던 법적 위상은 통시적으로도, 공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과 청이 君臣關係를 맺게 된 과정 및 시점, 그리고 청의 법제도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淸代 조선과 청의 관계를 통시적·공시적으로 "典型的 朝貢關係"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5) 도리어 淸代 조선은 조공국인 동시에 '大淸' 질서의 일원으로서 大淸帝國體制 내에서 애매하고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146) 議處·罰銀으로 대표되는 조선국왕의 특수한 위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4) 李命美, 앞의 글, 2016a.
145) 全海宗, 앞의 글, 60면.
146) Lim Jongtae, "Tributary Relations between the Chosŏn and Ch'ing Courts to 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153-164.

▌참고문헌

『康熙起居注』, 國立古宮博物院, 清代起居注冊・康熙朝, 臺北: 聯京出版事業公司, 2009a.
『康熙起居注』,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代起居注冊・康熙朝, 北京: 中華書局, 2009b.
『光緒大清會典』,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79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2002.
『光緒大清會典事例』,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80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2002.
『內國史院檔』,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綜合的研究チーム 譯注, 內國史院檔・天聰五年 Ⅱ, 東京: 東洋文庫, 2013.
『內國史院檔』, 河內良弘 譯註・編著,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崇德二・三年分, 京都: 松香堂書店, 2010.
『大清律例』, 鄭秦・田濤 點校, 中華轉世法典 大清律例, 北京: 法律出版社, 1998.
『大清律例通考』, 馬建石・楊育裳 主編, 大清律例通考校注,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2.
『滿文本清聖祖起居注稿: 康熙二十四年六月一日至二十九日』(內閣大庫檔案 167307-001),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所藏.
『滿文本清聖祖起居注稿: 康熙三十年六月一日至二十九日』(內閣大庫檔案 167311-001),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所藏.
「淳安縣奏報順治六至九年分起運錢糧數目日期」(A016-011, B8685-B8708),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明清檔案』 16,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六部成語』, 永志堅 整理, 六部成語(滿漢合璧),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6.
『六部成語注解』, 內藤乾吉 原校, 程兆奇 標點, 程天權 審訂, 六部成語注解,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7.

金海一, 「燕行日記」, 『檀溪集』 卷3,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28, 東國大 出版部, 2001.
孟胄瑞, 『曾祖考燕行錄』,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21, 東國大 出版部, 2001.
法制處 編, 『百憲摠要』, 法制處, 1979.
丁若鏞 外, 『事大考例』, 동아시아學術院・大東文化研究院 共編, 茶山學團 文獻集成 9, 成均館大 出版部, 2008.
韓垈 等, 「吏部處分過之滿洲官員事件文冊」, 國立北平故宮博物院大獻館 編, 『文獻叢編』 26-2, 1937.

계승범,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韓國史學史學報』 제26집, 한국사학사학회, 2012, 117-145면.
丘凡眞, 「清의 朝鮮使行 人選과 '大清帝國體制'」, 『人文論叢』 제59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8, 1-50면.
金暻綠, 「朝鮮時代 朝貢體制와 對中國 使行」, 『明清史研究』 제30집, 명청사학회, 2008, 91-128면.
김근하,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朝鮮時代史學報』 제7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87-124면.
金文植,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傳信錄』」, 『震檀學報』 제115집, 震檀學會, 2012, 93-122면.
김우진, 「安秋元・南明遺民 사건과 顯宗의 현실인식」, 『史學志』 제54집, 檀國大 史學會, 2017, 1-

36면.
김진옥, 「'推考'의 性格과 運用」, 『고전번역연구』 제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217-251면.
김창수, 「청의 조서(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제8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3, 151-184면.
_____, 「17~18세기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과 조선·청 관계 구조」, 『朝鮮時代史學報』 제8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9, 77-108면.
金慧子,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硏究」, 『梨大史苑』 제18·19집, 梨花女大 史學會, 1982, 57-81면.
남이슬, 「康熙年間 淸國人의 海洋犯越과 朝·淸 양국의 대응」, 『明淸史硏究』 제44집, 명청사학회, 2015, 191-239면.
양지하, 「17세기 중엽 조선에 표류한 鄭成功 계열 海商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인식과 그 성격」, 『梨花史學硏究』 제50집, 梨花史學硏究所, 2015, 1-33면.
우경섭, 「명청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 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제88호, 조선시대사학회, 2019, 47-76면.
李命美, 「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 『東國史學』 제60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a, 85-120면.
_____,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2016b.
李善愛,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 건륭 연간 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제46집, 명청사학회, 2016, 31-73면.
李成珪, 「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五松李公範敎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知識産業社, 1993, 503-568면.
_____,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제186집, 역사학회, 2005, 87-133면.
李花子, 『朝淸國境問題硏究』, 集文堂, 2008.
全海宗, 「淸代 韓中朝貢關係考」,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 59-112면.
최소자, 『淸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제51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a, 223-264면.
_____, 「1356(공민왕 5)~1369년(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 '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歷史敎育』 제116집, 역사교육연구회, 2010b, 233-271면.
_____,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韓國史硏究』 제162호, 韓國史硏究會, 2013, 3-44면.
_____,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제7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61-220면.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岡洋樹, 『淸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硏究』, 東京: 東方書店, 2007.
谷井陽子, 「淸代則例省例考」, 『東方學報』 第67冊,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1995, 137-239面.
楠木賢道, 『淸初対モンゴル政策史の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9.

島田正郎,『清朝蒙古例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2.
鈴木開,「丁應泰の變と朝鮮-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朝鮮學報』第219輯, 朝鮮學會, 2011, 39-71面.
鈴木中正,「黎朝後期の清との關係(一六八二-一八〇四年)」,『ベトナム中國關係史: 曲氏の擡頭から清佛戰爭まで』, 山本達郎 編, 東京: 山川出版社, 405-483面.
夫馬進,「明清中國の對朝鮮外交における「禮」と「問罪」」,『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a, 45-80面.
_____,「明清中國による對朝鮮外交の鏡としての對ベトナム外交」,『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b, 573-598面.
森川哲雄,「チャハルのブルニ親王の乱をめぐって」,『東洋學報』第64卷 1・2號, 東洋文庫, 1983, 99-129面.
上田裕之,「八旗俸祿制度の成立過程」,『滿族史研究』第2號, 東洋文庫 清代史研究室 滿族史研究會, 2003, 21-40面.
矢木毅,「朝鮮時代における三司の言論と官人の處罰」,『東方學報』第89册,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14, 1-64面.
_____,「朝鮮時代における死刑囚の再審制度: 詳覆・三覆啓と清朝の秋審」,『東方學報』第90册,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15, 145-171面.
栗原朋信,『秦漢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0.
片岡一忠,『中國官印制度研究』, 東京: 東方書店, 2008.

孟姝芳,「清乾隆中後期罰扣大員養廉銀與其行政處分之關系探析」,『安徽史學』2007年 第2期, 安徽省社會科學院, 2007, 30-36面.
艾永明,「清朝行政處分制度研究」,『江蘇社會科學』2004年 第2期, 江蘇省南京市, 2004, 158-163面.
吳愛明,「清督捕則例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王燕杰,「清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 以朝鮮人越境犯罪案件的審理爲中心」,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王興亞,「明代罰俸制度述論」,『中州學刊』1993年 第2期, 河南省社會科學院, 1993, 100-104面.
劉家駒,『清朝初期的八旗圈地』,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64.
_____,『清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劉世哲,「清太宗時期宗室犯罪的量刑原則和處罰方式」,『民族研究』1993年 第5期, 中國社會科學院 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1993, 77面, 84-96面.
李孟衡,「從朝鮮、滿洲間的逃人刷還問題看十七世紀東北亞國際秩序變遷」, 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張世明・王旭,「議罪銀新考」,『清史研究』2012年 第1期, 中國人民大學 清史研究所, 2012, 115-120面.
張存武,「清韓陸防政策及其實施: 清季中韓界務糾紛的再解釋」,『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a, 247-274面.
_____,「清韓封貢關係之制度性分析」,『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b, 72-85面.
_____,「清韓關係: 一六三六-一六四四」,『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c, 1-71面.
_____,「朝鮮對清外交機密費之研究」,『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d, 86-146面.

張晉藩・郭成康,『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鄭天挺,「清史語解」,『清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45/1999, 100-124面.
許 穎,「清代行政處分制度研究現狀述評」,『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3期, 西南大學期刊社, 2010, 186-189面.

Joanne Foakes, The Position of Heads of State and Senior Official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1-28.
Jung Donghun, "From a Lord to a Bureaucrat—The Change of Koryŏ King's Status in the Korea-China Relatio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9-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pp.115-136.
Lim Jongtae, "Tributary Relations between the Chosŏn and Ch'ing Courts to 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146-196.

「同文彙考」,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明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備邊司謄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jw.history.go.kr.
「新補受敎輯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
「瀋陽狀啓」, 동방미디어 koreaA2Z, http://www.koreaa2z.com.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清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通文館志」, 동방미디어 koreaA2Z, http://www.koreaa2z.com.

薛允升,「讀例存疑」光緒 31年 京師刊本, 鈴木秀光の中国法制史研究 ホームページ, http://www.terada.law.kyoto-u.ac.jp/dlcy(2019.03.29 검색).
孫綸,「定例成案合鐫」康熙 58년 刊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所藏 漢籍善本全文影像資料庫, http://shanben.ioc.u-tokyo.ac.jp/(2019.03.29 검색).

「Different types of sanctions」, European Council, 2018.10.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different-types/(2018.11.26 검색).

【Abstract】

Legal Status of Chosŏn King in the Qing Imperial Order—An Analysis on the Practices of Qing Legal Punishments on the King—

Lee, Jae-Kyung*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ystem, one country does not have legal jurisdiction on deeds of another nation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state immunity. Things were basically similar in premodern East Asian "tributary system". While Chinese dynasties insisted their universal supremacy over their neighbors in the ritual sphere, most of the time they couldn't exercise their legal jurisdiction beyond their border onto their tributary "vassals".

However,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17-18th century Chosŏn-Qing relationship. From Chongde to Kangxi reign (1636-1722), Qing government frequently deliberated on the wrongdoings of Chosŏn kings and requested to impose fine on the king with a certain amount of silver. Qing emperors usually ordered to stop the discussion or forgave the wrongdoings, but Kangxi emperor actually sentenced King Hyeonjong and King Sookjong to silver fines in 1666, 1682, and 1686.

The silver fines imposed on Chosŏn kings were not a mere diplomatic sanction, but an application of Qing legal disciplinary measures, the Chufen system. If Qing princes, nobles, or officials committed minor offenses, relevant authorities (i.e. the board of personnel) took charge of the cases and executed proper punishments including fining (i.e. silver), forfeiting of salary, demotion, and dismissal. From the beginning of the tributary relationship, the Manchus tried to indict and punish Chosŏn kings according to their own legal practices for the imperial princes and the Mongol vassals. The practice of imposing silver fines on Chosŏn kings was gradually developed through the Shunzhi and Kangxi reigns and legislated during the Yongzheng period.

Both Qing and Chosŏn regarded the silver fines on Chosŏn kings as a legal punishment, not a ritual admonition. Qing government assumed the king of Chosŏn should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ide by Qing regulations, and keep his subjects from breaching Qing legal order. If he failed his duty, h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Qing laws. On the other hand, Chosŏn elites also regarded the fines as legal punishments, an unacceptable humiliation on their king, and an embarrassment which should be avoided at all cost.

Qing's legal jurisdiction on the king of Chosŏn was not a mere continuation of Ming Chinese tradition. Also, no other tributary sovereigns were regarded as possible targets of a legal indictment and silver fine during the whole Qing era. Therefore, the king of Chosŏn was different from Qing's any other tributary sovereigns.

On the other hand, along with Qing imperial princes, Mongol nobles, and Qing officials, the kings of Chosŏn could be punished by the Qing government with disciplinary measures. However, the Qing government could only impose fine on the king of Chosŏn, while it could demote, dismiss, or even execute Qing princes and officials fully according to Qing law. Qing emperors and officials acknowledged that Chosŏn was a "foreign country", and regarded the king of Chosŏn as "the sovereign in his own kingdom". Except for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Qing empire, the king of Chosŏn fully exercised his absolute power in his own realm just as other tributary sovereigns.

In that respect, we can conclude that Chosŏn king's legal status in the Qing imperial order was a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unique one.

Keywords: Deliberation on Penalty, Silver Fine, *Chufen* System, Legal Status of the King of Chosŏn, The Qing Imperial Order.

접수일: 2019.03.29.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